

군산시 공고 제2022-1159호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가. 개발행위의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어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행위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고,
- 나.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건축행위자가 납부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안 제3조)
- 나. 특별회계 재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특별회계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기반시설설치 부담률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마.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및 고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2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군산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

(우편번호 : 54078,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전화 : 063-454-3502, 팩스 : 063-452-8171, 전자우편 : pongjoon@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계(전화 063-454-35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를 정하고,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 영 제4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증축행위를 말한다.
4. “납부의무자”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5.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비용으로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부담률”이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총 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재원) 특별회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용도) 특별회계의 용도는 영 제70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 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물의 신·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6조(예탁 및 자금의 전출) ①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기금 조례” 이라 한다)에 따라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예산은 기금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7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할 경우와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될 때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해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8조(부담률)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

제9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① 영 제67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부담계획에 따른다.

②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토록 한다.

제10조(용지환산계수 및 고시) ①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시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별표에 따른다.

②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결정된 용지환산계수를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와 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법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반시설 특별회계 징수관과 재무관, 수입금출납원 등을 둔다.

1. 징수관·재무관 : 기반시설 설치비용 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기반시설 설치비용 업무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 기반시설 설치비용 업무담당주사

제12조(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 구역별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하고,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반시설부담구역 용지환산계수의 산식(제10조 관련)

구 분	산 식	비고
용지환산계수	기준용지환산계수 - 공제용지환산계수	
기준용지환산계수	계획된 기반시설면적 / 계획된 건축연면적의 총합	
공제용지환산계수	이미 설치된 기반시설면적 / 계획된 건축연면적의 총합	

비고

1. “용지환산계수”란 기준용지환산계수에서 공제용지환산계수를 차감한 차이인 적용용지환산계수를 말한다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라 0.4 범위내에서 정한다)

2. “기준용지환산계수”란 이상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기반시설의 최대량(목표량)을 단위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환산한 용지계수를 말한다.
3. “공제용지환산계수”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기반시설 용량을 단위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환산한 용지계수를 말한다.
4. “계획된 기반시설면적”과 “이미 설치된 기반시설면적”이란 영 제4조의2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군산시 공고 제2022 -1161호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 1. 28. 법률 제18794호로 지방세징수법(시행일 2022. 2. 3.)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면책적 의미의 “결손처분” 용어를 내부적 행정행위인 “정리보류”로 변경하고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은 “시효완성정리”로 변경하여 관련 조문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9호, 제10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10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 기획예산과(규제심사, 법무의정), 여성가족과(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기간 : 2022. 6. 2. ~ 6. 22.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시민납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시민납세과

(전화 : 063-454-2472, FAX :

063-453-9183)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시민납세과 납세지원계 (전화 063-454-2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2.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신·구조문, 서식 대비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결손처리”를 “시효완성정리”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결손처분)”을 “(정리보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를 “정리보류 및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결손처분표(갑, 을)”를 “정리보류표(갑·을) 및 시효완성정리표(병)”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를 “(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로, “결손처분 취소액”을 “정리보류 취소액”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결손처분의 사후관리)”를 “(정리보류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 한”을 “정리보류를 한”으로, “결손처분을 취소”를 “정리보류를 취소”로,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9호, 제1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생략)</p> <p>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체납액은 <u>결손처리</u>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는 작성하지 아니한다.</p> <p>③ (생략)</p>	<p>제12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시효완성정리</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u>결손처분</u>) 법 제106조에 따른 <u>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u> 및 별지 제9호서식의 <u>결손처분표(갑, 을)</u>에 따른다.</p>	<p>제13조(<u>정리보류 등</u>) ----- -- <u>정리보류 및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u> ----- ---- <u>정리보류표(갑·을) 및 시효완성정리표(병)</u>----- -----.</p>
<p>제14조(<u>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u>) 해당 연도에서 <u>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u></p>	<p>제14조(<u>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u>) ----- ----- <u>정리보류를</u> ----- ----- <u>정리보류 취소액</u>----- ----- ----- ----- ----- ----- ----- ----- -----.</p>
<p>제15조(<u>결손처분의 사후관리</u>) <u>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u></p>	<p>제15조(<u>정리보류의 사후관리</u>) <u>정리보류를 한</u> -----</p>

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
 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 정리보류를 취
소----- 계속
진행-----.

■ 군산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개정>

(앞 쪽)

부과
 신고납부
 감액
 정리보류
 시효완성정리

] 결정결의서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 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담당		납액 통지 제 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시·군	년시·군 세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항	세액			
		가산세			
	목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				
납세인원	시(도) 구(시·군)		번길 외 명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내역서

구분 의	과세표준	세율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 시효완성정리 결정액			납세인원	납액(감액) 통지번호
			계	본세	가산금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m²)

■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개정>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수납구분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개정>

징 수 부

회계연시·군 : 년시·군
 결의년월 : 년시·군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구분	연 간 목표액	월까지 목표액	추 경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정리보류액		시효완성정리액		미수액	징수비율			지방세환급금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대년간	대월간	대조정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총 합계																	
현년도 합계																	
소계																	
〇〇세																	
〇〇세																	

297mm×210mm(백상지 80g/㎡)

■ 군산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개정>

(앞 쪽)

정 리 보 류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체납자	주소	상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명 (법인명)							
과세번호	연시·군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인)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병)을 사용한다.
-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개정>

(뒤 쪽)

정 리 보 류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 군산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개정>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연락처 :)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세목명	납부기한	체납액			정리보류여부
		본세	가산금	계	

체납요지	
------	--

심의청구이유	
--------	--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장 (인)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붙임 : 증명서류 부.

210mm×297mm(백상지 80g/m²)

신·구서식대비표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9호(갑,을), 제10호)

현 행

■ 군산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font-size: 2em;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5px;"> <input type="checkbox"/> 부과 <input type="checkbox"/> 신고납부 <input type="checkbox"/> 감액 <input type="checkbox"/> 결손 </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left: 10px;">]</div> <div style="margin-left: 20px;">결정결의서</div> </div>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등재	이하생략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개 정 안

■ 군산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font-size: 2em;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5px;"> <input type="checkbox"/> 부과 <input type="checkbox"/> 신고납부 <input type="checkbox"/> 감액 <input type="checkbox"/> 정리보류 <input type="checkbox"/> 시효완성정리 </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left: 10px;">]</div> <div style="margin-left: 20px;">결정결의서</div> </div>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등재	이하생략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현 행

■ 군산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뒤 쪽)

내역서

구분 동	과세표준	세율	감액·결손 결정액			납세인원	납액(감액) 통지번호
			계	본세	가산금		
							이 하 생 략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개 정 안

(뒤쪽)

내역서

구분 동	과세표준	세율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 시효완성정리 결정액			납세인원	납액(감액) 통지번호
			계	본세	가산금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현 행

■ 군산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결정액 통지부

결재			통지 번호	통지 연월일	연시· 군 납기	세목	세액	납세 인원	비고
과장	계장	담당자							
									이 하 생 략

개 정 안

■ 군산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부

결재			통지 번호	통지 연월일	연시· 군 납기	세목	세액	납세 인원	비고
과장	계장	담당자							
									이 하 생 략

현 행

■ 군산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

세 목 []세 / 세목구분 [] / 구·군 []

세입연도	세목	세액			납세인원	납부기한	비고		
		본세	가산금	계					
									이 하 생 략

개 정 안

■ 군산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

세 목 []세 / 세목구분 [] / 구·군 []

세입연도	세목	세액			납세인원	납부기한	비고		
		본세	가산금	계					
									이 하 생 략

현 행

■ 군산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수 납 부

과세번호	징수결의일	납기일	수납구분			
과세물건	과표액	과세물건지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납세자명	세목	부과금액	감액/결손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이 하 생 략			

개 정 안

■ 군산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수 납 부

과세번호	징수결의일	납기일	수납구분			
과세물건	과표액	과세물건지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납세자명	세목	부과금액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이 하 생 략			

현 행

■ 군산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징 수 부

회계연시·군 : 년시·군
 결의년월 : 년시·군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구분	연 간 목표액	월까지 목표액	추 경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비율			지방세환급금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대년간	대월간	대조정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총 합계															이 하 생 략

개 정 안

■ 군산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징 수 부

회계연시·군 : 년시·군
 결의년월 : 년시·군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구분	연 간 목표액	월까지 목표액	추 경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정리보류액		시효완성정리액		미수액	징수비율			지방세환급금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대년간	대월간	대조정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총 합계																이 하 생 략	

현 행

■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앞 쪽)

결 손 처 분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생년월일	이 하 생 략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개 정 안

■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앞 쪽)

정 리 보 류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이 하 생 략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병)을 사용한다.
-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현 행

■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뒤 쪽)

결 손 처 분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이 하 생 략

개 정 안

■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뒤 쪽)

정 리 보 류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이 하 생 략

현 행

■ 군산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을)]

결 손 처 분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 고자 합니다.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년 월 일			
과세 번호	연시·군/ 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이 하 생 략

개 정 안

■ 군산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을)]

정 리 보 류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년 월 일			
과세 번호	연시·군/ 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이 하 생 략

현 행

■ 군산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연락처 :)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세목명	납부기한	체납액			결손처분여부
		본세	가산금	계	
					이 하 생 략

개 정 안

■ 군산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연락처 :)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세목명	납부기한	체납액			정리보류여부
		본세	가산금	계	
					이 하 생 략

참고

관계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3. 삭제 <2022. 1. 28.>
-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군산시 공고 제2022-1184호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5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의 개정으로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 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 의무규정 및 필요사항 신설(안 제5조2)
- 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에 따른 지도·감독 규정 추가(안 제21조제2항)

3. 입법 예고 기간 : 2022. 6. 2. ~ 2022. 6. 22. [20일간]

4. 의견제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1) 우) 54069 군산시 변영로 281, 군산시청 체육진흥과
- (2) 전화 : (063)454-3294
- (3) 팩스 : (063)454-6022 (수신 여부 확인 필요)
- (3) 전자우편 : ppjeong@korea.kr (수신 여부 확인 필요)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계(063-454-329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군산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체육회 사무국 직원에 한함)
-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 3. 사무시설 임차료
- 4. 그 밖에 시장이 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탁·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받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5조의2(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 ①</u> <u>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u> <u>에 따라 군산시체육회(이하 “체</u> <u>육회” 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u> <u>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u> <u>여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체육회</u> <u>사무국 직원에 한함)</u> <u>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u> <u>3. 사무시설 임차료</u> <u>4. 그 밖에 시장이 체육회 운영에</u>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u> <p><u>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u> <u>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u> <u>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p>
<p>제19조(기금의 관리) ① (생 략)</p> <p><u>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위탁</u> <u>·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군산시</u> <u>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u> <u>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u> <u>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위탁하</u> <u>여 한다.</u></p> <p>③ (생 략)</p>	<p>제19조(기금의 관리) ① (현행과 같 음)</p> <p><u>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위탁</u> <u>·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군산시</u> <u>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u> <u>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u> <u>금운용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제21조(지도·감독) (생략)

<신설>

제21조(지도·감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받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2. 3.> [시행일: 2022. 8. 11.]

군산시 공고 제2022-1186호

「군산시체육진흥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체육진흥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폐지 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군산시체육진흥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2020. 9. 29. 시행)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군산시체육진흥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군산시체육진흥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을 폐지

3. 입법 예고 기간 : 2022. 6. 2. ~ 2022. 6. 22. [20일간]

4. 의견제출

군산시체육진흥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1) 우) 54069 군산시 변영로 281, 군산시청 체육진흥과
- (2) 전화 : (063)454-3294
- (3) 팩스 : (063)454-6022 (수신 여부 확인 필요)
- (3) 전자우편 : ppjeong@korea.kr (수신 여부 확인 필요)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계(063-454-329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체육진흥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폐지 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체육진흥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폐지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체육진흥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군산시체육진흥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군산시체육진흥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 정) 1995.01.13 규칙 제27호
(일부개정) 2017.12.15 규칙 제65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체육진흥사업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년도)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년도에 준한다.

제3조(기금의 계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출납 책임자는 군산시체육진흥사업 운영관리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제4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 단기금융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산관서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6.>

②기금의 관리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기금의 운영,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 예탁증서, 지원내역부(별지 제1호서식), 기탁금 수불부(별지 제2호서식) 및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기금출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협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내에서 기금출납 책임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기금출납 책임자 : 30만원이내의 출납

제5조(회계관계 책임자의 의무) 제3조의 회계 책임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은 책임을 진다.

제6조(기금의 운용) 기금의 운영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체육진흥 목적을 위하여 본 기금을 부득히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시는 체육진흥협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도 있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모금사업
2. 시민체육시설 및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 군산시 체육대회에 대한 지원
5. 각종 체육행사 지원
6.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7.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부 칙(1995.01.13 규칙제 0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5. 규칙 제6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22 - 1187호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등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군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2. 개정이유

- 시민의 여가문화 충족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서군산축구장, 군산인공암벽장을 조성함에 따라 시설 이용료 및 이용시간을 규정하고
- 체육시설의 명칭과 용어의 정정으로 혼란을 최소화 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조례안 별첨

-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 일부개정(안 제2조제1호, “별표1”)
- 근거법령 부존재로 조례정비(안 제4조제1항제7호, 제25조)
- 군산인공암벽장 운영시간 신설(안 제9조제8항)
-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제10조제1항, “별표2 내지 별표9”)
-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기준 및 환불기간 개정(안 제13조 제1항1호 및 3항)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의결(공공시설 사용위약금 부담경감) 반영

-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규정 신설(안 제15조제1항제6호)
- 군산인공암벽장 관리운영 규정 신설(안 제23조제5항, “별표10”)
- 용어정정(안 제1조,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같은조제3항, 제6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제3호, 같은조 제2항제1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16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2항, 같은조 제4항)

4. 의견제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1) 우) 54023 군산시 번영로 281, 체육진흥과
- (2) 전화 : 063-454-5572, FAX : 063-454-5569
- (3) 전자우편 : zenith02@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체육진흥과 운영계(063-454-55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체위향상”을 “건강증진”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텔레비전”을 “텔레비전”으로 한다.

- 1. “체육시설”이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고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별지 제1호””를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습사용)코자”를 “(연습사용)하고자”로, “별표 2 의”를 “별표 3의”로, “받으므로 허가에 같음한다”를 “받음으로써 허가를 대신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3항 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개장시간”을 “사용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군산인공암벽장의 운영시간은 평일 13:00~21:00, 휴일(토요일포함) 10:00~18:00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별표1”내지“별표7””을 “별표 2 내지 별표 9”로 하고, 같

은 조 제3항 본문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불우청소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증을 소지한 사람”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때는 사용일 5일전까지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전액반환, 1일전까지는 10퍼센트 공제후 반환, 이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후 반환한다.

- ③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6세미만의 어린이”를 “유아”로, “경노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제2항 중 “설치나”를 “설치 및”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본문 중 “정립시킴”을 “적립시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환불”을 “반환”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군산시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군산인공암벽장의 위탁관리는 별표 10에 따른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신 설>

군 산 시 체 육 시 설 현 황(제2조 관련)

구 분	시 설 명 칭	시 설 개 요	위 치
월 명 종 합 경 기 장	주 경 기 장	육상트랙, 축구장 1면	변영로 281
	월명실내체육관	농구장 1면	변영로 281
	월명야구장	야구장 1면	변영로 281
	월명테니스장	테니스코트 10면	변영로 281
	월명족구장	족구장 2면	변영로 281
	월명농구장	농구장 1면	변영로 281
	월명실내수영장	6레인(성인), 유아풀1	변영로 281
	월명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실내, 실외	변영로 281
	월명씨름장	모래 1면	변영로 281
외 부 체 육 시 설	수송체육공원 축구장	축구장 1면	수송동로 58
	수송체육공원 파크골프장	9홀	수송동로 58
	미장체육공원(1)	테니스장 2면, 풋살장 1면	미장동 542-2
	미장체육공원(2)	족구장 2면, 게이트볼장 1면	미장동 484-2
	생말체육공원 축구장	축구장 1면	오식도동 508
	생말체육공원	테니스코트 4면, 풋살장 1면	오식도동 508
	금강체육공원 축구장	축구장 1면	내흥동 894
	금강체육공원 제 1 야구장	야구장 1면	내흥동 894
	금강체육공원 제 2 야구장	야구장 1면	내흥동 903
	소룡체육공원	족구장 3면, 풋살장 2면, 그라운드골프장 1면, 농구장 1면	소룡동 237-1
	서군산 축구장	축구장 1면	임사길 14
	군산실내배드민턴장	배드민턴코트 15면	남수송5길 39
	군산야외수영장	성인풀1, 어린이풀1, 유아풀1	해망로 546-10
	진남정(궁도장)	사대 21면	원발산길 49
	월명공원테니스장	테니스코트 3면	군산창1길 12
	군산인공암벽장	리드벽(12개), 스피드벽(1개), 실내암벽장	술꼬지1길 46
	군봉축구장	축구장 1면	조촌동 산21-3

[별표 2]

체 육 시 설 전 용 사 용 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목 적	평 일	휴 일 (토요일포함)	초 과 요 금
주 경 기 장	우 레 탄 트 렉	체 육 경 기	50,000	75,000	·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체 육 이 외	70,000	105,000	· 8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인 조 잔 디 구 장	체 육 경 기	50,000	75,000	· 2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체 육 이 외	70,000	105,000	·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월 명 야 구 장		체 육 경 기	40,000	50,000	·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체 육 이 외	60,000	105,000	
월 명 테 니 스 장 (1 면 당)		체 육 경 기	10,000	15,000	·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체 육 이 외	12,000	17,000	
월 명 실 내 체 육 관 및 군 산 실 내 배 드 민 터 장		체 육 경 기	40,000	60,000	·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 주간(1회)	60,000	90,000	
		체 육 이 외	200,000	300,000	· 8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 주간(1회)	300,000	450,000	
월 명 족 구 장 (1 면 당)		체 육 경 기	5,000	10,000	· 2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체 육 이 외			
수 송 체 육 공 원 축 구 장		체 육 경 기	20,000	30,000	· 2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체 육 이 외	30,000	50,000	·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생 말 체 육 공 원 축 구 장		체 육 경 기	20,000	30,000	· 2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체 육 이 외	30,000	50,000	·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금 강 체 육 공 원 축 구 장		체 육 경 기	20,000	30,000	· 2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체 육 이 외	30,000	50,000	·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서 군 산 축 구 장		체 육 경 기	20,000	30,000	· 2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체 육 이 외	30,000	50,000	·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 2시간미만 사용시 2시간으로 간주한다.
- 주간 사용자가 야간 사용시간 1시간 초과 사용시는 야간사용자로 간주한다.
- 부대시설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 이후 조성되는 체육시설은 “전용사용료” 를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별표 3】

체 육 시 설 이 용 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간	개 인(1인당 이용료)	비 고
주경기장(인조잔디구장)	2시간당	2,000	
야 구 장	“	2,000	
테 니 스 장 (1면당)	“	2,000	
월 명 실 내 체 육 관	“	1,000	
군산실내배드민턴장	“	2,000	

- 어린이, 청소년, 경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이용료는 기본료의 50%를 감면함.
- 2시간 미만 사용시 2시간으로 간주한다.
- 단체는 동일종목 1개팀(동일소속) 20인 이상으로 하고 해당 기본료의 80%를 징수한다.
- 삭제
- 테니스장의 클럽회원은 1면당 월 300,000원을 징수하며, 사용시간은 조기, 주간, 야간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1면당 사용인원을 30인이하로 하며, 각종 경기 등 행사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테니스 수강료는 월 50,000원을 징수한다. (단, 수강료 납부한 자는 입장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기본료의 50%를 가산 징수함
- 등록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하여 기본료의 50%를 징수함.
- 부대시설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별표4】

부 대 시 설 사 용 료 (제10조 관련)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

(단위 : 원)

종 별	기 준	금 액
전 기	1시간	관허요금
음향시설	1일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명실내체육관 : 10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 주 경 기 장 : 2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 월명야구장 : 2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전 광 판	1일 1회	20,000원 + (전기기본사용료×일수/30) + 전기사용관허요금
조 명	1일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명야구장 : 50,000원+(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 월명테니스장 : (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단, 클럽회원 월 조명사용료 : 시간당관허요금x사용시간x20일x1면) ○ 월명족구장 : (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 주 경 기 장 : 50,000원+(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 월명실내체육관 : 50,000원+(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후로링카바	1 일	50,000원 1일 초과하는 매 1일에 대하여 기본액 50% 징수한다.
배구매트	1 일	200,000원 1일 초과하는 매 1일에 대하여 기본액 50% 징수한다. (단,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한다.)
냉·난방	1 일	전기료 및 연료대금 (냉방은 전기료)
수도료	1 회	수도사용 및 설비
무대사용료	1 회	30,000원
집기사용료	1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설대 1개당 : 1,000원, 탁자 1개당 : 500원 ○ 의 자 1개당 : 철제 100원, 목재 200원

- 한 경기장에 전광판 조명타워 등 2개 시설을 동시 사용할 때 전기기본요금은 1개 시설에만 적용한다.
- 1일 1회라 함은 사용자가 1회의 경기 또는 공연시에 사용함을 기준함.

단, 동일한 사용자가 1일에 2회이상 연속 사용하기 위하여 1회 입장료이상의 금액으로 매표하였거나

(야구의 경우 더블헤더), 2회에 걸쳐 매표(사용)할 때는 2회 사용으로 적용한다.

- <삭제 2007.11.30.>
- 부대시설의 종별 외 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한다.

【별표 5】

중 계 방 송 료(제10조 관련)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

(단위 : 원)

구 분	텔 레 비 전		라 디 오	
	방 영	녹 화	방 영	녹 화
프 로 경 기	30,000	20,000	15,000	10,000
아 마 경 기	20,000	10,000	10,000	5,000
행 사 및 공 연	30,000	20,000	15,000	10,000

【별표 6】

광고물 및 상행위 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에드벌룬 게양	1일 1개	30,000원 (1일초과 5,000원/1일)	· 기준면적 초과 광고물설치시 기본요금에 초과면적을 곱한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게시등 부착 광고물 (주경기장, 월명야구장)	건당 1.2m×10m 이내	5일이내 100,000원 (1일초과 10,000원/일)	
게시등 부착 광고물 (월명야구장 외야펜스)	건당 2m×8m 이내	1,000,000원 (당해연도에 한함)	
게시등 부착 및 입식 광고물 (월명실내체육관) (군산실내배드민턴장)	건당 1.2m×10m 이내	년간 1,000,000원 5일이내 50,000원 (1일초과 5,000원/일)	
(노점) 고정식 이동식	1일 1개 시설 1인 1일	㎡당 10,000원	차량제외 차량포함

[별표 7]

월명실내수영장이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이 용 료	
	1 일 입 장	월 회 원 권
어 른	2,500	50,000
학 생 · 군 인	2,000	40,000
어린이 · 경로대상	1,500	30,000
유 아	700	14,000

- 단체는 30인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요금의 80%를 징수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권을 교부 받은 자임.
(1일 1회 한함) <개정 2012.08.16>
- 등록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하여 50%를 징수함.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해 85%를 징수한다.
- 단, 중복할인은 할 수 없다 <개정 2012.08.16>
-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신설 2012.08.16.>

[별표 8]

군산야외수영장이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비 고
유 아	어린이	청소년	어 른	
2,000	3,000	4,000	5,000	1회(1명)

- 경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이용료는 해당요금의 50%를 감면한다.
- “단체”란 20명 이상으로 하고 해당요금의 50% 징수한다.
- 단, 중복 할인은 할 수 없다.

【별표 9】 <신 설>

군산인공암벽장 이용료(제10조 관련)

구 분	이용료	비 고 (직영)
월 강습요금	○ 학 생 40,000원 ○ 일반인 50,000원	주 2회 기준
월 회원료	○ 20,000원	
일일 이용료	○ 3,000원	

【별표 10】 <신 설>

군산인공암벽장 관리·운영 위탁 사항(제23조 관련)

-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군산인공암벽장 관리 운영에 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군산인공암벽장의 관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위탁기간은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u>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u> 군산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p>	<p>제1조(목적) ----- <u>건강 증진</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체육시설</u>”이라 함은 <u>월명종합경기장 월명주경기장·월명테니스장·월명야구장·월명게이트볼장·월명족구장·월명체육관·월명실내수영장·월명공원 테니스장·수송공원 축구장·생말공원 축구장·금강공원 축구장·군산시궁도장·군산시배드민턴장 등 정식 인정대회가 가능한 표준시설을 갖춘 각종 경기장과 군산시 소룡동 1666번지 일원의 군산 야외수영장을 말하며, 부대시설</u>이라 함은 그에 <u>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u></p> <p>2. “<u>시설의 사용</u>”이라 함은</p>	<p>제2조(정의) -----</p> <p>1. “<u>체육시설</u>”이란 <u>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고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u> “<u>부대시설</u>”이라 함은 그에 <u>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u></p> <p>2. -----</p>

현행	개정안
<p>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광고·게시·공연·전람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p> <p>3. ~ 16. (생략)</p> <p>제3조(사용허가) ①운동경기나 연습 또는 그 이외의 행사를 위하여 군산시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하여 <u>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p> <p>② (생략)</p> <p>③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u>별표 2</u>의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으므로 허가에 갈음한다.</p> <p>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①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이상 경합시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p>	<p>-----<u>(텔레비전</u> -----</p> <p>-----</p> <p>-----.</p> <p>3. ~ 16. (현행과 같음)</p> <p>제3조(사용허가) ①-----</p> <p>-----</p> <p>-----</p> <p>----- <u>사람은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u>-----</p> <p>----- <u>시장</u>-----</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u>(연습사용)하고자</u> -----</p> <p>----- <u>별표 3의</u> -----</p> <p>----- <u>받음으로써 허가</u>를 대신한다.</p> <p>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①---</p> <p>-----</p> <p>-----</p> <p>-----.</p>

현행	개정안
<p>다.</p> <p>1. ~ 6. (생략)</p> <p>7. <u>상업사용을 목적으로 2명이 상이 신청하여 사용이 경합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의 절차에 따라 계약하여야 한다.</u></p> <p>8. (생략)</p> <p>② (생략)</p> <p>제6조(시설의 개방) ①·② (생략)</p> <p>③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 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9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u>전항</u>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p> <p>④ (생략)</p> <p>제9조(사용시간) ① (생략)</p> <p>②제1항의 <u>개장시간</u>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④<u>이용시간은 1회 입장에 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u></p>	<p>1. ~ 6.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8.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시설의 개방)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제2항</u> -----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사용시간)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사용시간</u>----- ----- --.</p> <p>③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현 행	개 정 안
<p>⑤ ~ ⑦ (생 략) <u><신 설></u></p> <p>제10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는 “<u>별표1</u>” 내지 “ “<u>별표7</u>” 에 따라 징수한다.</p> <p>② (생 략)</p> <p>③경기장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 라 한다)이 기 허가된 시간에서 소정의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u>별표 1</u>” 에 의하여 산출한 초과분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주·야 간 계속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④ (생 략)</p> <p>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할인) (생 략)</p> <p>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p>⑧ <u>군산인공암벽장의 운영시간은 평일 13:00~21:00, 휴일(토요일포함) 10:00~18:00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u></p> <p>제10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u>별표 2</u> <u>내지 별표 9</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별표 2</u>----- ----- .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할인) (현행과 같음)</p> <p>① ----- -----</p>

현행	개정안
<p>를 감면할 수 있다.다만, 중복하여 할인을 받을 수 없다</p> <p>1.·2. (생략)</p> <p>3. <u>불우 청소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u>-----</p> <p>-----</p> <p>4. ~ 8. (생략)</p> <p>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50%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중복하여 할인을 받을 수 없다.</p> <p>1. 「장애인복지법」에 <u>의하여 장애인증을 소지한 사람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u></p> <p>2. ~ 9. (생략)</p> <p>제13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p> <p>1. <u>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 연기, 변경하는 때는 사용일 5일전까지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90퍼센트를, 3일전까지는 50퍼센트를, 2일전까지는 30퍼센트를 반환하며 그 이후는 반환하지 아</u></p>	<p>-----</p> <p>1.·2. (현행과 같음)</p> <p>3. <u>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u>-----</p> <p>-----</p> <p>4. ~ 8.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1.----- <u>따른 등록 장애인</u>-----</p> <p>-----</p> <p>2. ~ 9. (현행과 같음)</p> <p>제13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u>①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u></p> <p>1. <u>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때는 사용일 5일전까지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전액반환, 1일전까지는 10퍼센트 공제후 반환, 이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u></p>

현행	개정안
<p><u>니한다.</u></p> <p>2. ~ 5. (생략)</p> <p>② 삭제</p> <p><u><신설></u></p> <p>제14조(입장권) ①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이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보호자가 있는 <u>6세미만의 어린이</u> 및 <u>65세이상의 사람으로서 경노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사람</u></p> <p>② (생략)</p> <p>제1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시장은 다음과 같이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p>	<p><u>과 잔여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후 반환한다.</u></p> <p>2. ~ 5. (현행과 같음)</p> <p><u>③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u></p> <p>제14조(입장권)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유아 ----- ----- 주 민등록증-----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 -----.</p>

현행	개정안
<p>1. ~ 5. (생략) <u><신설></u></p> <p>② (생략)</p> <p>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생략)</p> <p>②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p> <p>③ (생략)</p> <p>제18조(손해배상) ① (생략)</p> <p>② 삭제</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금액을 사전에 사용자로부터 예치금으로 <u>정립</u>시킬 수 있다. 다만, 원상복구후의 잔여금액은 즉시 사용자에게 <u>환불</u>하여야 한다.</p> <p>제23조(공공체육시설위탁관리·임대차) ① (생략)</p> <p>②<u>전항</u>에 의하여 공공체육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임대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p> <p>1. ~ 5. (생략)</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그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설치 및</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8조(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p> <p>③----- ----- <u>적</u> <u>립</u>시킬 -----. ----- <u>반</u> <u>환</u>-----.</p> <p>제23조(공공체육시설위탁관리·임대차) ① (현행과 같음)</p> <p>②<u>제1항</u>----- ----- ----- -----.</p> <p>1. ~ 5.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③ (생 략)</p> <p>④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임차기 간중 <u>군산시장이</u> 필요로 하는 행사가 있을시 공공체육시설 사 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p> <p><u><신 설></u></p> <p><u>제25조(공공체육시설 차임) ①공</u> <u>공체육시설 임대</u>에 따른 차임의 <u>결정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u> <u>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다</u> <u>만, 시장은 공익성과 입장 수입</u> <u>의 실정을 감안하여 일정기간</u> <u>차임을 감면할 수 있다.</u></p> <p><u>②전항의 차임 납입은 공공체육</u> <u>시설 입장 수입이 있는 당해년</u> <u>도의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의</u> <u>기간에 한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시장</u>----- ----- -----.</p> <p><u>⑤ 군산인공암벽장의 위탁관리</u> <u>는 별표 10에 따른다.</u></p> <p><u><삭 제></u></p>

신·구조문대비표(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사용목적</th> <th>휴입 (토요일포함)</th> <th>평일</th> <th>초과요금</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경기장</td> <td>체육경기</td> <td>75,000</td> <td>50,000</td> <td>8시간 표준초과시 표준액의 1/2 가산</td> </tr> <tr> <td>체육이외</td> <td>105,000</td> <td>70,000</td> <td>표준액의 1/2 가산</td> </tr> <tr> <td rowspan="2">인조잔디구장</td> <td>체육경기</td> <td>75,000</td> <td>50,000</td> <td>축구는 1세팅 2시간 원액 (초대입장 2할 가산)</td> </tr> <tr> <td>체육이외</td> <td>105,000</td> <td>70,000</td> <td>·4시간 표준초과시 표준액의 1/2가산 (신설 2007.11.30)</td> </tr> <tr> <td rowspan="2">야구장</td> <td>체육경기</td> <td>50,000</td> <td>40,000</td> <td>·야구경기는 1세팅 4시간 원액</td> </tr> <tr> <td>체육이외</td> <td>105,000</td> <td>60,000</td> <td>·4시간 표준초과시 표준액의 1/2가산 (신설 2007.11.30)</td> </tr> <tr> <td rowspan="2">테니스장 (1면당)</td> <td>체육경기</td> <td>15,000</td> <td>10,000</td> <td>·8시간 표준초과시 표준액의 1/2 가산</td> </tr> <tr> <td>체육이외</td> <td>17,000</td> <td>12,000</td> <td></td> </tr> <tr> <td rowspan="3">월명체육관 (관내체육시설포함)</td> <td>체육경기</td> <td>60,000</td> <td>40,000</td> <td>·8시간 표준초과시 표준액의 1/2 가산</td> </tr> <tr> <td>-주간(1회)</td> <td>90,000</td> <td>60,000</td> <td></td> </tr> <tr> <td>-야간(1회)</td> <td>300,000</td> <td>300,000</td> <td></td> </tr> <tr> <td rowspan="2">군산실내체육관</td> <td>체육경기</td> <td>300,000</td> <td>300,000</td> <td>·8시간 표준초과시 표준액의 1/2 가산</td> </tr> <tr> <td>체육이외</td> <td>450,000</td> <td>300,000</td> <td></td> </tr> <tr> <td>축구장</td> <td>체육경기</td> <td>10,000</td> <td>5,000</td> <td>·2시간 가산</td> </tr> <tr> <td rowspan="2">수송공원 축구장</td> <td>체육경기</td> <td>30,000</td> <td>20,000</td> <td>·2시간 가산</td> </tr> <tr> <td>체육이외</td> <td>50,000</td> <td>30,000</td> <td>·4시간 가산(표준초과시 5할 가산)</td> </tr> <tr> <td rowspan="2">생말공원 축구장</td> <td>체육경기</td> <td>30,000</td> <td>20,000</td> <td>·2시간 가산</td> </tr> <tr> <td>체육이외</td> <td>50,000</td> <td>30,000</td> <td>·4시간 가산(표준초과시 5할 가산)</td> </tr> <tr> <td rowspan="2">금강공원 축구장</td> <td>체육경기</td> <td>30,000</td> <td>20,000</td> <td>·2시간 가산</td> </tr> <tr> <td>체육이외</td> <td>50,000</td> <td>30,000</td> <td>·4시간 가산(표준초과시 5할 가산)</td> </tr> </tbody> </table> <p>○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주간 사용자가 야간 사용시간 1시간이상 초과 사용시는 야간사용자로 간주함 ○ 등록장애인인 50%를 할인 징수함 ○ 이후 조성되는 체육시설은 "전용사용료" 를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p>		구분	사용목적	휴입 (토요일포함)	평일	초과요금	주경기장	체육경기	75,000	50,000	8시간 표준초과시 표준액의 1/2 가산	체육이외	105,000	70,000	표준액의 1/2 가산	인조잔디구장	체육경기	75,000	50,000	축구는 1세팅 2시간 원액 (초대입장 2할 가산)	체육이외	105,000	70,000	·4시간 표준초과시 표준액의 1/2가산 (신설 2007.11.30)	야구장	체육경기	50,000	40,000	·야구경기는 1세팅 4시간 원액	체육이외	105,000	60,000	·4시간 표준초과시 표준액의 1/2가산 (신설 2007.11.30)	테니스장 (1면당)	체육경기	15,000	10,000	·8시간 표준초과시 표준액의 1/2 가산	체육이외	17,000	12,000		월명체육관 (관내체육시설포함)	체육경기	60,000	40,000	·8시간 표준초과시 표준액의 1/2 가산	-주간(1회)	90,000	60,000		-야간(1회)	300,000	300,000		군산실내체육관	체육경기	300,000	300,000	·8시간 표준초과시 표준액의 1/2 가산	체육이외	450,000	300,000		축구장	체육경기	10,000	5,000	·2시간 가산	수송공원 축구장	체육경기	30,000	20,000	·2시간 가산	체육이외	50,000	30,000	·4시간 가산(표준초과시 5할 가산)	생말공원 축구장	체육경기	30,000	20,000	·2시간 가산	체육이외	50,000	30,000	·4시간 가산(표준초과시 5할 가산)	금강공원 축구장	체육경기	30,000	20,000	·2시간 가산	체육이외	50,000	30,000	·4시간 가산(표준초과시 5할 가산)	<p>[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사용목적</th> <th>평일</th> <th>휴입 (토요일포함)</th> <th>초과요금</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주경기장</td> <td>체육경기</td> <td>50,000</td> <td>75,000</td> <td>·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td> </tr> <tr> <td>체육이외</td> <td>70,000</td> <td>105,000</td> <td>·8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td> </tr> <tr> <td>체육경기</td> <td>50,000</td> <td>75,000</td> <td>·2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td> </tr> <tr> <td>체육이외</td> <td>70,000</td> <td>105,000</td> <td>·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td> </tr> <tr> <td rowspan="2">월명야구장</td> <td>체육경기</td> <td>40,000</td> <td>50,000</td> <td>·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td> </tr> <tr> <td>체육이외</td> <td>60,000</td> <td>105,000</td> <td></td> </tr> <tr> <td rowspan="2">월명테니스장 (1면당)</td> <td>체육경기</td> <td>10,000</td> <td>15,000</td> <td>·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td> </tr> <tr> <td>체육이외</td> <td>12,000</td> <td>17,000</td> <td></td> </tr> <tr> <td rowspan="3">월명실내체육관 및 군산실내체육관</td> <td>체육경기</td> <td>40,000</td> <td>60,000</td> <td>·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td> </tr> <tr> <td>-주간(1회)</td> <td>60,000</td> <td>90,000</td> <td></td> </tr> <tr> <td>-야간(1회)</td> <td>200,000</td> <td>300,000</td> <td></td> </tr> <tr> <td rowspan="2">군산실내체육관</td> <td>체육경기</td> <td>300,000</td> <td>300,000</td> <td>·8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td> </tr> <tr> <td>체육이외</td> <td>300,000</td> <td>450,000</td> <td></td> </tr> <tr> <td rowspan="2">월명축구장 (1면당)</td> <td>체육경기</td> <td>5,000</td> <td>10,000</td> <td>·2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td> </tr> <tr> <td>체육이외</td> <td>5,000</td> <td>10,000</td> <td></td> </tr> <tr> <td rowspan="2">수송체육공원 축구장</td> <td>체육경기</td> <td>20,000</td> <td>30,000</td> <td>·2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td> </tr> <tr> <td>체육이외</td> <td>30,000</td> <td>50,000</td> <td>·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td> </tr> <tr> <td rowspan="2">생말체육공원 축구장</td> <td>체육경기</td> <td>20,000</td> <td>30,000</td> <td>·2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td> </tr> <tr> <td>체육이외</td> <td>30,000</td> <td>50,000</td> <td>·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td> </tr> <tr> <td rowspan="2">금강체육공원 축구장</td> <td>체육경기</td> <td>20,000</td> <td>30,000</td> <td>·2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td> </tr> <tr> <td>체육이외</td> <td>30,000</td> <td>50,000</td> <td>·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td> </tr> <tr> <td rowspan="2">시군산 축구장</td> <td>체육경기</td> <td>20,000</td> <td>30,000</td> <td>·2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td> </tr> <tr> <td>체육이외</td> <td>30,000</td> <td>50,000</td> <td>·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td> </tr> </tbody> </table> <p>○ 2시간미만 사용시 2시간으로 간주한다. ○ 주간 사용자가 야간 사용시간 1시간 초과 사용시는 야간사용자로 간주한다. ○ 부대시설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 이후 조성되는 체육시설은 "전용사용료" 를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p>		구분	사용목적	평일	휴입 (토요일포함)	초과요금	주경기장	체육경기	50,000	75,000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체육이외	70,000	105,000	·8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체육경기	50,000	75,000	·2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체육이외	70,000	105,000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월명야구장	체육경기	40,000	50,000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체육이외	60,000	105,000		월명테니스장 (1면당)	체육경기	10,000	15,000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체육이외	12,000	17,000		월명실내체육관 및 군산실내체육관	체육경기	40,000	60,000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주간(1회)	60,000	90,000		-야간(1회)	200,000	300,000		군산실내체육관	체육경기	300,000	300,000	·8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체육이외	300,000	450,000		월명축구장 (1면당)	체육경기	5,000	10,000	·2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체육이외	5,000	10,000		수송체육공원 축구장	체육경기	20,000	30,000	·2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체육이외	30,000	50,000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생말체육공원 축구장	체육경기	20,000	30,000	·2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체육이외	30,000	50,000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금강체육공원 축구장	체육경기	20,000	30,000	·2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체육이외	30,000	50,000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시군산 축구장	체육경기	20,000	30,000	·2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체육이외	30,000	50,000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구분	사용목적	휴입 (토요일포함)	평일	초과요금																																																																																																																																																																																																									
주경기장	체육경기	75,000	50,000	8시간 표준초과시 표준액의 1/2 가산																																																																																																																																																																																																									
	체육이외	105,000	70,000	표준액의 1/2 가산																																																																																																																																																																																																									
인조잔디구장	체육경기	75,000	50,000	축구는 1세팅 2시간 원액 (초대입장 2할 가산)																																																																																																																																																																																																									
	체육이외	105,000	70,000	·4시간 표준초과시 표준액의 1/2가산 (신설 2007.11.30)																																																																																																																																																																																																									
야구장	체육경기	50,000	40,000	·야구경기는 1세팅 4시간 원액																																																																																																																																																																																																									
	체육이외	105,000	60,000	·4시간 표준초과시 표준액의 1/2가산 (신설 2007.11.30)																																																																																																																																																																																																									
테니스장 (1면당)	체육경기	15,000	10,000	·8시간 표준초과시 표준액의 1/2 가산																																																																																																																																																																																																									
	체육이외	17,000	12,000																																																																																																																																																																																																										
월명체육관 (관내체육시설포함)	체육경기	60,000	40,000	·8시간 표준초과시 표준액의 1/2 가산																																																																																																																																																																																																									
	-주간(1회)	90,000	60,000																																																																																																																																																																																																										
	-야간(1회)	300,000	300,000																																																																																																																																																																																																										
군산실내체육관	체육경기	300,000	300,000	·8시간 표준초과시 표준액의 1/2 가산																																																																																																																																																																																																									
	체육이외	450,000	300,000																																																																																																																																																																																																										
축구장	체육경기	10,000	5,000	·2시간 가산																																																																																																																																																																																																									
수송공원 축구장	체육경기	30,000	20,000	·2시간 가산																																																																																																																																																																																																									
	체육이외	50,000	30,000	·4시간 가산(표준초과시 5할 가산)																																																																																																																																																																																																									
생말공원 축구장	체육경기	30,000	20,000	·2시간 가산																																																																																																																																																																																																									
	체육이외	50,000	30,000	·4시간 가산(표준초과시 5할 가산)																																																																																																																																																																																																									
금강공원 축구장	체육경기	30,000	20,000	·2시간 가산																																																																																																																																																																																																									
	체육이외	50,000	30,000	·4시간 가산(표준초과시 5할 가산)																																																																																																																																																																																																									
구분	사용목적	평일	휴입 (토요일포함)	초과요금																																																																																																																																																																																																									
주경기장	체육경기	50,000	75,000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체육이외	70,000	105,000	·8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체육경기	50,000	75,000	·2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체육이외	70,000	105,000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월명야구장	체육경기	40,000	50,000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체육이외	60,000	105,000																																																																																																																																																																																																										
월명테니스장 (1면당)	체육경기	10,000	15,000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체육이외	12,000	17,000																																																																																																																																																																																																										
월명실내체육관 및 군산실내체육관	체육경기	40,000	60,000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주간(1회)	60,000	90,000																																																																																																																																																																																																										
	-야간(1회)	200,000	300,000																																																																																																																																																																																																										
군산실내체육관	체육경기	300,000	300,000	·8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체육이외	300,000	450,000																																																																																																																																																																																																										
월명축구장 (1면당)	체육경기	5,000	10,000	·2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체육이외	5,000	10,000																																																																																																																																																																																																										
수송체육공원 축구장	체육경기	20,000	30,000	·2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체육이외	30,000	50,000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생말체육공원 축구장	체육경기	20,000	30,000	·2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체육이외	30,000	50,000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금강체육공원 축구장	체육경기	20,000	30,000	·2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체육이외	30,000	50,000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시군산 축구장	체육경기	20,000	30,000	·2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체육이외	30,000	50,000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1/2 가산)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 체 육 시 설 이 용 료 (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기 간</th> <th>개 인(1인당 이용료)</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주경기장(육상트랙)</td> <td>2시간당</td> <td>300</td> <td></td> </tr> <tr> <td>주경기장(인조잔디구장)</td> <td>“</td> <td>2,000</td> <td></td> </tr> <tr> <td>야 구 장</td> <td>“</td> <td>2,000</td> <td></td> </tr> <tr> <td>테 니 스 장 (1면당)</td> <td>“</td> <td>2,000</td> <td></td> </tr> <tr> <td>월 명 체 육 관</td> <td>“</td> <td>1,000</td> <td></td> </tr> <tr> <td>군산실내배드민턴장</td> <td>“</td> <td>2,000</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청소년, 경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이용료는 기본료의 50%를 감면함 ○ 단에는 동일종목 1개팀(동일소속) 20인 이상으로 하고 해당 기본료의 80%를 징수함 ○ 월 회원 이용료는 1인당 당해 기본료에 20%를 곱한 금액을 징수함 ○ 테니스장의 클럽회원은 1면당 월 300,000원을 징수한다 (단 1면당 사용인원을 30인 이하로 하며, 각종 경기 등 행사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테니스수강료는 월 50,000원을 징수한다. (단 수강료 납부한자는 입장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기본료의 50%를 가산 징수함 ○ 등복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하여 기본료의 50%를 징수함 	구 분	기 간	개 인(1인당 이용료)	비 고	주경기장(육상트랙)	2시간당	300		주경기장(인조잔디구장)	“	2,000		야 구 장	“	2,000		테 니 스 장 (1면당)	“	2,000		월 명 체 육 관	“	1,000		군산실내배드민턴장	“	2,000		<p>[별표 3] 체 육 시 설 이 용 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기 간</th> <th>개 인(1인당 이용료)</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주경기장(인조잔디구장)</td> <td>2시간당</td> <td>2,000</td> <td></td> </tr> <tr> <td>야 구 장</td> <td>“</td> <td>2,000</td> <td></td> </tr> <tr> <td>테 니 스 장 (1면당)</td> <td>“</td> <td>2,000</td> <td></td> </tr> <tr> <td>월 명 실 내 체 육 관</td> <td>“</td> <td>1,000</td> <td></td> </tr> <tr> <td>군산실내배드민턴장</td> <td>“</td> <td>2,000</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청소년, 경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이용료는 기본료의 50%를 감면함 ○ 2시간 미만 사용시 2시간으로 간주한다. ○ 단에는 동일종목 1개팀(동일소속) 20인 이상으로 하고 해당 기본료의 80%를 징수한다. ○ 삭제 ○ 테니스장의 클럽회원은 1면당 월 300,000원을 징수하며, 사용시간은 조기, 주간, 야간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1면당 사용인원을 30인 이하로 하며, 각종 경기 등 행사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테니스수강료는 월 50,000원을 징수한다. (단 수강료 납부한 자는 입장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기본료의 50%를 가산 징수함 ○ 등복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하여 기본료의 50%를 징수함. ○ 부대시설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구 분	기 간	개 인(1인당 이용료)	비 고	주경기장(인조잔디구장)	2시간당	2,000		야 구 장	“	2,000		테 니 스 장 (1면당)	“	2,000		월 명 실 내 체 육 관	“	1,000		군산실내배드민턴장	“	2,000	
구 분	기 간	개 인(1인당 이용료)	비 고																																																		
주경기장(육상트랙)	2시간당	300																																																			
주경기장(인조잔디구장)	“	2,000																																																			
야 구 장	“	2,000																																																			
테 니 스 장 (1면당)	“	2,000																																																			
월 명 체 육 관	“	1,000																																																			
군산실내배드민턴장	“	2,000																																																			
구 분	기 간	개 인(1인당 이용료)	비 고																																																		
주경기장(인조잔디구장)	2시간당	2,000																																																			
야 구 장	“	2,000																																																			
테 니 스 장 (1면당)	“	2,000																																																			
월 명 실 내 체 육 관	“	1,000																																																			
군산실내배드민턴장	“	2,000																																																			

현	행	개	정	안																																																																																								
<p>[별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u>부대시설 사용료</u></p> <table border="1"> <thead> <tr> <th>종</th> <th>기</th> <th>금</th> <th>액</th> </tr> </thead> <tbody> <tr> <td>전 기</td> <td>1. 시간당</td> <td colspan="2">관리요금</td> </tr> <tr> <td>음향시설</td> <td>1일 1회</td> <td colspan="2"> 월명채육관 : 10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월명주경기장 : 2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월명야구장 : 2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td> </tr> <tr> <td>전 광 관</td> <td>1일 1회</td> <td colspan="2">20,000원 +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 + 전기사용관리요금</td> </tr> <tr> <td>조 명</td> <td>1일 1회</td> <td colspan="2"> ○ 월명야구장 : 50,000원 +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 + 전기사용관리요금 ○ 월명테니스장 :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 + 전기사용관리요금 (단, 클럽회원 월 조정사용료 : 시간당관리요금 × 사용시간 20일 × 1번) ○ 주 경 기 장 :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 + 전기사용관리요금 ○ 월명주경기장 : 50,000원 +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 + 전기사용관리요금 ○ 월명체육관 : 50,000원 +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 + 전기사용관리요금 </td> </tr> <tr> <td>후로릿카바</td> <td>1. 일</td> <td colspan="2">50,000원 1일 초과하는 매 1일에 대하여 기본액 50% 징수</td> </tr> <tr> <td>배구 매트</td> <td>1. 일</td> <td colspan="2">200,000원 1일 초과하는 매 1일에 대하여 기본액 50% 징수 단,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td> </tr> <tr> <td>냉·난방</td> <td>1. 일</td> <td colspan="2">전기료 및 인료대금 (냉방은 전기료) <개정 2004.07.30 2012.08.16></td> </tr> <tr> <td>수도료</td> <td>1. 회</td> <td colspan="2">수도사용 및 설비</td> </tr> <tr> <td>무대사용료</td> <td>1. 회</td> <td colspan="2">30,000원</td> </tr> <tr> <td>집기사용료</td> <td>1. 회</td> <td colspan="2">연설대 1개당 : 1,000원, 탁자 1개당 : 500원 의 자 1개당 : 철재 100원, 목재 200원</td> </tr> </tbody> </table> <p>○ 한 경기장에 전광판 조명타워 등 2개 시설을 동시 사용할 때 전기기본요금은 1개 시설에만 적용</p> <p>○ 1일 1회라 함은 사용자가 1회의 경기 또는 공연시에 사용함을 기준함. 단, 동일한 사용자가 1일에 2회 이상 연속 사용하기 위하여 1회 입장료 이상의 금액으로 매표하였거나(아구의 경우 더블데), 2회에 걸쳐 매표(사용)할 때는 2회 사용으로 적용한다.</p> <p>○ <삭제 2007.11.30></p>		종	기	금	액	전 기	1. 시간당	관리요금		음향시설	1일 1회	월명채육관 : 10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월명주경기장 : 2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월명야구장 : 2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전 광 관	1일 1회	20,000원 +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 + 전기사용관리요금		조 명	1일 1회	○ 월명야구장 : 50,000원 +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 + 전기사용관리요금 ○ 월명테니스장 :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 + 전기사용관리요금 (단, 클럽회원 월 조정사용료 : 시간당관리요금 × 사용시간 20일 × 1번) ○ 주 경 기 장 :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 + 전기사용관리요금 ○ 월명주경기장 : 50,000원 +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 + 전기사용관리요금 ○ 월명체육관 : 50,000원 +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 + 전기사용관리요금		후로릿카바	1. 일	50,000원 1일 초과하는 매 1일에 대하여 기본액 50% 징수		배구 매트	1. 일	200,000원 1일 초과하는 매 1일에 대하여 기본액 50% 징수 단,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		냉·난방	1. 일	전기료 및 인료대금 (냉방은 전기료) <개정 2004.07.30 2012.08.16>		수도료	1. 회	수도사용 및 설비		무대사용료	1. 회	30,000원		집기사용료	1. 회	연설대 1개당 : 1,000원, 탁자 1개당 : 500원 의 자 1개당 : 철재 100원, 목재 200원		<p>[별표4]</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대 시 설 사 용 료(제10조 관련)</u></p> <p style="text-align: center;">(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종</th> <th>기</th> <th>금</th> <th>액</th> </tr> </thead> <tbody> <tr> <td>전 기</td> <td>1시간</td> <td colspan="2">관리요금</td> </tr> <tr> <td>음향시설</td> <td>1일1회</td> <td colspan="2"> ○ 월명실내체육관 : 10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 주 경 기 장 : 2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 월명야구장 : 2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td> </tr> <tr> <td>전 광 관</td> <td>1일1회</td> <td colspan="2">20,000원 +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 + 전기사용관리요금</td> </tr> <tr> <td>조 명</td> <td>1일1회</td> <td colspan="2"> ○ 월명야구장 : 50,000원 +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 + 전기사용관리요금 ○ 월명테니스장 :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 + 전기사용관리요금 (단, 클럽회원 월 조정사용료 : 시간당관리요금 × 사용시간 20일 × 1번) ○ 월명주경기장 :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 + 전기사용관리요금 ○ 주 경 기 장 : 50,000원 +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 + 전기사용관리요금 ○ 월명체육관 : 50,000원 +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 + 전기사용관리요금 </td> </tr> <tr> <td>후로릿카바</td> <td>1. 일</td> <td colspan="2">50,000원 1일 초과하는 매 1일에 대하여 기본액 50% 징수한다.</td> </tr> <tr> <td>배구매트</td> <td>1. 일</td> <td colspan="2">200,000원 1일 초과하는 매 1일에 대하여 기본액 50% 징수한다. (단,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한다.)</td> </tr> <tr> <td>냉·난방</td> <td>1. 일</td> <td colspan="2">전기료 및 인료대금 (냉방은 전기료)</td> </tr> <tr> <td>수도료</td> <td>1. 회</td> <td colspan="2">수도사용 및 설비</td> </tr> <tr> <td>무대사용료</td> <td>1. 회</td> <td colspan="2">30,000원</td> </tr> <tr> <td>집기사용료</td> <td>1. 회</td> <td colspan="2"> ○ 연설대 1개당 : 1,000원, 탁자 1개당 : 500원 ○ 의 자 1개당 : 철재 100원, 목재 200원 </td> </tr> </tbody> </table> <p>○ 한 경기장에 전광판 조명타워 등 2개 시설을 동시 사용할 때 전기기본요금은 1개 시설에만 적용한다.</p> <p>○ 1일 1회라 함은 사용자가 1회의 경기 또는 공연시에 사용함을 기준함. 단, 동일한 사용자가 1일에 2회 이상 연속 사용하기 위하여 1회 입장료 이상의 금액으로 매표하였거나(아구의 경우 더블데), 2회에 걸쳐 매표(사용)할 때는 2회 사용으로 적용한다.</p> <p>○ <삭제 2007.11.30.></p> <p>○ 부대시설의 종별 외 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한다.</p>			종	기	금	액	전 기	1시간	관리요금		음향시설	1일1회	○ 월명실내체육관 : 10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 주 경 기 장 : 2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 월명야구장 : 2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전 광 관	1일1회	20,000원 +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 + 전기사용관리요금		조 명	1일1회	○ 월명야구장 : 50,000원 +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 + 전기사용관리요금 ○ 월명테니스장 :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 + 전기사용관리요금 (단, 클럽회원 월 조정사용료 : 시간당관리요금 × 사용시간 20일 × 1번) ○ 월명주경기장 :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 + 전기사용관리요금 ○ 주 경 기 장 : 50,000원 +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 + 전기사용관리요금 ○ 월명체육관 : 50,000원 +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 + 전기사용관리요금		후로릿카바	1. 일	50,000원 1일 초과하는 매 1일에 대하여 기본액 50% 징수한다.		배구매트	1. 일	200,000원 1일 초과하는 매 1일에 대하여 기본액 50% 징수한다. (단,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한다.)		냉·난방	1. 일	전기료 및 인료대금 (냉방은 전기료)		수도료	1. 회	수도사용 및 설비		무대사용료	1. 회	30,000원		집기사용료	1. 회	○ 연설대 1개당 : 1,000원, 탁자 1개당 : 500원 ○ 의 자 1개당 : 철재 100원, 목재 200원	
종	기	금	액																																																																																									
전 기	1. 시간당	관리요금																																																																																										
음향시설	1일 1회	월명채육관 : 10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월명주경기장 : 2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월명야구장 : 2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전 광 관	1일 1회	20,000원 +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 + 전기사용관리요금																																																																																										
조 명	1일 1회	○ 월명야구장 : 50,000원 +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 + 전기사용관리요금 ○ 월명테니스장 :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 + 전기사용관리요금 (단, 클럽회원 월 조정사용료 : 시간당관리요금 × 사용시간 20일 × 1번) ○ 주 경 기 장 :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 + 전기사용관리요금 ○ 월명주경기장 : 50,000원 +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 + 전기사용관리요금 ○ 월명체육관 : 50,000원 +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 + 전기사용관리요금																																																																																										
후로릿카바	1. 일	50,000원 1일 초과하는 매 1일에 대하여 기본액 50% 징수																																																																																										
배구 매트	1. 일	200,000원 1일 초과하는 매 1일에 대하여 기본액 50% 징수 단,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																																																																																										
냉·난방	1. 일	전기료 및 인료대금 (냉방은 전기료) <개정 2004.07.30 2012.08.16>																																																																																										
수도료	1. 회	수도사용 및 설비																																																																																										
무대사용료	1. 회	30,000원																																																																																										
집기사용료	1. 회	연설대 1개당 : 1,000원, 탁자 1개당 : 500원 의 자 1개당 : 철재 100원, 목재 200원																																																																																										
종	기	금	액																																																																																									
전 기	1시간	관리요금																																																																																										
음향시설	1일1회	○ 월명실내체육관 : 10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 주 경 기 장 : 2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 월명야구장 : 2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전 광 관	1일1회	20,000원 +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 + 전기사용관리요금																																																																																										
조 명	1일1회	○ 월명야구장 : 50,000원 +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 + 전기사용관리요금 ○ 월명테니스장 :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 + 전기사용관리요금 (단, 클럽회원 월 조정사용료 : 시간당관리요금 × 사용시간 20일 × 1번) ○ 월명주경기장 :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 + 전기사용관리요금 ○ 주 경 기 장 : 50,000원 +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 + 전기사용관리요금 ○ 월명체육관 : 50,000원 +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 + 전기사용관리요금																																																																																										
후로릿카바	1. 일	50,000원 1일 초과하는 매 1일에 대하여 기본액 50% 징수한다.																																																																																										
배구매트	1. 일	200,000원 1일 초과하는 매 1일에 대하여 기본액 50% 징수한다. (단,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한다.)																																																																																										
냉·난방	1. 일	전기료 및 인료대금 (냉방은 전기료)																																																																																										
수도료	1. 회	수도사용 및 설비																																																																																										
무대사용료	1. 회	30,000원																																																																																										
집기사용료	1. 회	○ 연설대 1개당 : 1,000원, 탁자 1개당 : 500원 ○ 의 자 1개당 : 철재 100원, 목재 200원																																																																																										

현 행	개 정 안
-----	-------

[별표 4]

중 계 방 송 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

(단 위 : 원)

구 분	텔 레 비 전		라 디 오	
	방 영	녹 화	방 영	녹 화
프로경기	30,000	20,000	15,000	10,000
아마경기	20,000	10,000	10,000	5,000
행사 및 공연	30,000	20,000	15,000	10,000

[별표 5]

상행위 및 광고물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에드빌론 개양	1일 1개	30,000원 (1일초과 5,000원/1일)	· 삭제<2012.08.16> · 기준면적 초과 광고물설치시 기본요금에 초과면적을 곱한 금액을 추가 징수할수 있다 <개정 2004.07.30>
게시등 부착 광고물 (야구장, 주경기장)	건당 1.2m×10m 이내	5일내 100,000원 (1일초과 10,000원/일)	
게시등 부착 광고물(야구장 외야펜스)	건당 2m×8m 이내	1,000,000원 (당해년도에 한함)	
(월명체육관) (군산실내배드민턴장) 게시등 부착 및 입식 광고물	건당 1.2m×10m 이내	년간 1,000,000원 5일내 50,000원 (1일초과 5,000원/일)	
(노점) 고정식 이동식	1일 개업소 1인 1일	㎡당 1,000원 10,000원	

[별표 5]

중 계 방 송 료(제10조 관련)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

(단위 : 원)

구 분	텔 레 비 전		라 디 오	
	방 영	녹 화	방 영	녹 화
프로경기	30,000	20,000	15,000	10,000
아마경기	20,000	10,000	10,000	5,000
행사 및 공연	30,000	20,000	15,000	10,000

[별표 6]

광고물 및 상행위 시설 사용료(제 10조 관련)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에드빌론 개양	1일 1개	30,000원 (1일초과 5,000원/1일)	· 기준면적 초과 광고물설치시 기본 요금에 초과 면적 을 곱 한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게시등 부착 광고물 (주경기장, 월명야구장)	건당 1.2m×10m 이내	5일내 100,000원 (1일초과 5,000원/1일)	
게시등 부착 광고물 (월명야구장 외야펜스)	건당 2m×8m 이내	1,000,000원 (당해년도에 한함)	
게시등 부착 및 입식 광고물 (월명실내체육관) (군산실내배드민턴장)	건당 1.2m×10m 이내	년간 1,000,000원 5일내 50,000원 (1일초과 5,000원/일)	
(노점) 고정식 이동식	1일 1개 시설 1인 1일	㎡당 10,000원	

현 행	개 정 안
-----	-------

[별표 6]

월 명 실 내 수 영 장 이 용 료

(단위 : 원)

구 분	이 용 료	
	1 일 입 장	월 회 원 권
어 른	2,500	50,000
학 생 · 군 인	2,000	40,000
어 린 이 · 경 로 대 상	1,500	30,000
유 아	700	14,000

- 단체는 30인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요금의 80%를 징수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권을 교부 받은 자임.
(1일 1회 한함) <개정 2012.08.16>
- 등록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하여 50%를 징수함.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해 85%를 징수한다.
- 단, 중복할인은 할 수 없다 <개정 2012.08.16>
-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신설 2012.08.16>

[별표 7]

군 산 야 외 수 영 장 이 용 료

(단위 : 원)

구 분				비 고
유 아	어 린 이	청 소 년	어 른	
2,000	3,000	4,000	5,000	1회(1명)

- 경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이용료는 해당요금의 50%를 감면한다.
- “단체”란 20명 이상으로 하고 해당요금의 50% 징수한다.
- 단, 중복 할인은 할 수 없다.

[별표 7]

월 명 실 내 수 영 장 이 용 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이 용 료	
	1 일 입 장	월 회 원 권
어 른	2,500	50,000
학 생 · 군 인	2,000	40,000
어 린 이 · 경 로 대 상	1,500	30,000
유 아	700	14,000

- 단체는 30인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요금의 80%를 징수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권을 교부 받은 자임.
(1일 1회 한함) <개정 2012.08.16>
- 등록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하여 50%를 징수함.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해 85%를 징수한다.
- 단, 중복할인은 할 수 없다 <개정 2012.08.16>
-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신설 2012.08.16>

[별표 8]

군 산 야 외 수 영 장 이 용 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비 고
유 아	어 린 이	청 소 년	어 른	
2,000	3,000	4,000	5,000	1회(1명)

- 경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이용료는 해당요금의 50%를 감면한다.
- “단체”란 20명 이상으로 하고 해당요금의 50% 징수한다.
- 단, 중복 할인은 할 수 없다.

군산시 공고 제2022-1205호

군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5월 3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의 개정으로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 의무규정 신설(안 제5조2)

3. 입법 예고 기간 : 2022. 6. 2. ~ 2022. 6. 22. [20일간]

4. 의견제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1) 우) 54069 군산시 번영로 281, 군산체력인증센터 3층 체육진흥과 (사정동)
- (2) 전화 : (063)454-3297
- (3) 팩스 : (063)454-6022 (수신 여부 확인 필요)
- (3) 전자우편 : cplah111@korea.kr (수신 여부 확인 필요)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계(063-454-32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장애인체육회 운영비등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군산시장장애인체육회(이하“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직원에 한함)
-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 3. 사무시설 임차료
-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5조의2(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군산시 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직원에 한함)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p>②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관 계 법 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2. 3.> [시행일: 2022. 8. 11.]

군산시 공고 제 2022 - 1218호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의 명칭 및 위치 정비를 통해 청사 이전 등 주민의 행정 변화에 대한 체감도 제고하조가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조례 [별표] 군산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명칭변경 : 시청 → 군산시청 /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행정 읍·면·동
 - 위치변경 : 군산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 도로명주소 현행화

3. 의견제출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1) (우)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 2) 전화 063-454-2245, FAX 063-454-222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시정계 (063-454-22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 를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2조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군산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관련)

구 분	위 치
군산시청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옥 구 읍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6
옥 산 면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산성로 200
회 현 면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회현로 181
임 피 면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
서 수 면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탑천로 596
대 야 면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7
개 정 면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성 산 면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2
나 포 면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나포초교길 9
옥 도 면	전라북도 군산시 내항2길 125
옥 서 면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봉들3길 10
해 신 동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220
월 명 동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6길 51
삼 학 동	전라북도 군산시 미원로 17
신 풍 동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215
중 앙 동	전라북도 군산시 큰샘길 47
홍 남 동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377
조 촌 동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5길 15
경 암 동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3길 56
구 암 동	전라북도 군산시 세풍길 21
개 정 동	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339-5
수 송 동	전라북도 군산시 동수송1길 7
나운 1동	전라북도 군산시 신설3길 3
나운 2동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3길 16
나운 3동	전라북도 군산시 부곡1길 25
소 룡 동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안4길 30
미 성 동	전라북도 군산시 공항로 37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별표] 군산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의 소재지		[별표] 군산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의 소재지	
구 분	위 치	구 분	위 치
시 청	군산시 조촌동	군산시청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옥구읍사무소	옥구읍 선제리	옥구읍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6
옥산면사무소	옥산면 옥산리	옥산면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산성로 200
회현면사무소	회현면 대정리	회현면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회현로 181
임피면사무소	임피면 읍내리	임피면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
서수면사무소	서수면 서수리	서수면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탑천로 596
대야면사무소	대야면 지경리	대야면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7
개정면사무소	개정면 발산리	개정면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성산면사무소	성산면 고봉리	성산면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2
나포면사무소	나포면 옥곶리	나포면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나포초교길 9
옥도면사무소	금동	옥도면	전라북도 군산시 내항2길 125
옥서면사무소	옥서면 옥봉리	옥서면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봉들3길 10
해신동주민센터	금동	해신동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220
월명동주민센터	월명동	월명동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6길 51
삼학동주민센터	오룡동	삼학동	전라북도 군산시 미원로 17
신평동주민센터	문화동	신평동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215
중앙동주민센터	신영동	중앙동	전라북도 군산시 큰샘길 47
홍남동주민센터	미원동	홍남동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377
조촌동주민센터	조촌동	조촌동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5길 15
경암동주민센터	경암동	경암동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3길 56
구암동주민센터	구암동	구암동	전라북도 군산시 세풍길 21
개정동주민센터	개정동	개정동	전라북도 군산시 변영로 339-5
수송동주민센터	수송동	수송동	전라북도 군산시 동수송1길 7
나운1동주민센터	나운동	나운1동	전라북도 군산시 신설3길 3
나운2동주민센터	나운동	나운2동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3길 16
나운3동주민센터	나운동	나운3동	전라북도 군산시 부곡1길 25
소룡동주민센터	소룡동	소룡동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안4길 30
미성동주민센터	산북동	미성동	전라북도 군산시 공향로 371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 첨부 생략

4. 작 성 자

작 성 자	군산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장 박 종 길
연 락 처	(063) 454-2220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 조 례 명: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시자
 - 단체명 및 대표자(개인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제시사항

찬반 여부	사 유	비 고

2022년 6월 일

군산시장 귀하

군산시 고시 제2022 - 74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4호선 외 1)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구암동 272-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4호선 외1)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0일

군 산 시 장



◆ 사업의 개요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구암동 272-3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4호선 외1) 사업
 - 나. 명 칭 : 군산시 구암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1) 대로 2-4 : L=145m, B=1.5~2.9m, A=277㎡
 - 2) 중로 1-4 : L=122.5m, B=3.3~5.2m, A=566㎡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케이티앤지타워 13층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대표자 배일규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4. 12. 31.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대로2-4호선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구암동	271-7	도로	300	7	국토교통부				
2	구암동	272-3	공장	7,405	81	아시아신탭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3	구암동	272-4	도로	104	2	아시아신탭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4	구암동	274-6	공장	1,233	45	아시아신탭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5	구암동	274-7	공장	900	114	아시아신탭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6	조촌동	633-5	도로	369	6	군산도시가스 주식회사	군산시 소룡동 3-7			
7	조촌동	633-6	답	543	22	군산도시가스 주식회사	군산시 소룡동 3-7			
합 계				10,854	277					

○ 중로1-4호선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구암동	262-8	도로	3,533	55	군산시				
2	구암동	263-4	답	4,945	102	아시아신탭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3	구암동	267	답	380	2	아시아신탭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4	구암동	269-1	답	2,220	84	아시아신탭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5	구암동	271-3	구거	3	1	오금선	군산시 구암동 414			
6	구암동	271-4	답	5,774	212	아시아신탭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7	구암동	272-2	구거	623	46	군산시				
8	구암동	272-8	답	40	16	군산시				
9	구암동	273-10	답	331	9	아시아신탭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10	구암동	273-15	답	104	12	아시아신탭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11	구암동	606-2	구거	788	27	국토교통부				
합 계				18,741	566					

군산시 고시 제2022 - 77호

군산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비응도동 10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항만)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7일

군 산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비응도동 105번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나. 명 칭 : 비응항 수산물위판장 증축 및 시설개선사업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사업면적 : 4,263.84㎡
 - 나. 사업규모 (위판장 증축)

구 분	내 용							
	변경전				변경후			
층별 및 동별개요	구 분	층 별	면 적(㎡)	용 도	구 분	층 별	면 적(㎡)	용 도
	주 1	1 층	3,833.28	위판장 및 은행	주 1	1 층	3,833.28	위판장 및 은행
							430.56	위판장
		소계	3,833.28			소계	4,263.84	
	합 계		3,833.28	판매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합 계		4,263.84	판매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4. 사업시행자

가.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나. 성 명 : 국(해양수산부)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 ~ 2022. 11.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토지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관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내용	
군산시 비응도동	1	105	대	9,934	9,934	국					
계		1필지		9,934	9,934						

7. 관계도서 : 기재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2022-78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제6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5일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군산 구암동 272-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가. 명 칭 : 아시아신탁(주)
 - 나. 대 표 자 : 배일규
 - 다.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케이티앤지타워 13층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2년 5월 19일
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용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동 272-3 외 36필지
 -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 다. 대지면적 : 36,781m²
 - 라. 건축면적 : 7,058.7402m²(건폐율 : 19.19%)
 - 마. 연 면 적 : 134,497.9996m² (용적율 : 248.98%)
 - 바. 건축규모 :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8개동 외, 800세대

사. 주택공급 계획

형별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면적(m ²)	공용면적(m ²)	공급면적(m ²)	비고
계		800				
84A	민영주택	341	84.8292	25.8733	110.7025	
84B	민영주택	134	84.7570	25.8185	110.5755	
84C	민영주택	186	84.9882	26.5186	111.5068	
84D	민영주택	133	84.9932	25.9057	110.8989	
149	민영주택	2	149.5047	46.4790	195.9837	
153	민영주택	1	153.4785	47.2470	200.7255	
155	민영주택	3	155.9565	48.8293	204.7858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 업 비 : 311,346,986천원

차. 사업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4년 12월 31일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61	구암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암동 272-3번지 일원	-	증)37,624	37,624	금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m ²)	결정사유
신설	61	구암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암동 272-3번지 일원	37,624	도심지내 공장용지 및 미개발 주거지역에 대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및 도시경관 개선,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하며,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4	30 ~ 33	보조 간선 도로	7,790	경암동 대1-3	여방리 10호광장	일반 도로	6호 광장	건고228 ('86.5.23)	
변경	대로	2	4	30 ~ 33 (1.5 ~ 2.9)	보조 간선 도로	7,790 (145)	경암동 대1-3	여방리 10호광장	일반 도로	6호 광장	건고228 ('86.5.23)	완화차로 설치
기정	중로	1	4	20	집산 도로	745	구암동 대1-4	구암동 대2-4	일반 도로		건고228 ('86.5.23)	
변경	중로	1	4	20 ~ 25.8 (3.3 ~ 5.2)	집산 도로	745 (122.5)	구암동 대1-4	구암동 대2-4	일반 도로		건고228 ('86.5.23)	완화차로 설치

※ ()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폭원 확장 및 개설구간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2-4	대로2-4	◦완화차로 설치에 따른 선형 변경 - B=30 ~ 33m ※ set-back B=1.5 ~ 2.9m L=145m(테이퍼 포함)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와 접하여 설치하는 완화차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 도시계획도로로 일원화하여 변경하도록 함
중로1-4	중로1-4	◦완화차로 설치에 따른 폭원 및 선형 변경 : B=20m→20 ~ 25.8m ※ set-back B=3.3 ~ 5.2m L=122.5m(테이퍼 포함)	◦기존 중로1-4호선의 개설현황을 고려하여 지적선과 일치하도록 선형 변경하고,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설치하는 완화차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 도시계획도로로 일원화하여 변경하도록 함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	-	37,624	①	36,781	공동주택용지
			②	566	중로1-4호선(완화차로)
			③	277	대로2-4호선(완화차로)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①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2%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29층 이하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기반시설분담계획

-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며, 주변지역의 통행여건 개선을 위해 본 지구 단위계획에 포함하는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무상귀속

시설명	사업내용	폭원(m)	연장(m)	설치면적(㎡)	비고
합계		-	-	843	
대로2-4	완화차로 설치	30 ~ 33 (구역내 1.5 ~ 2.9m)	145	277	()은 폭원확장
중로1-4	완화차로 설치	20 ~ 25.8 (구역내 3.3 ~ 5.2m)	122.5	566	()은 폭원확장

○ 기타

-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외의 사항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내용 준수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실음생략

6. 관계도서는 군산시청(주택행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22-79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제6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5일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군산 구암동 공동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가. 명 칭 : 주식회사 도아디앤씨
 - 나. 대표자 : 정 호 경
 - 다. 주 소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오공로 11-19, 201-3호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2년 5월 19일
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용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동 355-10번지 일원
 -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 다. 대지면적 : 23,547㎡
 - 라. 건축면적 : 6,097.8359㎡ (건폐율 : 25.90%)

- 마. 연 면 적 : 78,406.2019㎡(용적률 : 249.98%)
- 바. 건축규모 : 지하 1층~지상 29층 /아파트 4개동 외, 449세대
- 사. 주택공급 계획

형 별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공급면적 (㎡)	비고
계		449				
84형A형	민영주택	125	84.6421	30.2542	114.8963	
84형B형	민영주택	103	84.7221	30.0250	114.7471	
109형A형	민영주택	193	109.9537	37.1703	147.1240	
109형C형	민영주택	28	109.4003	37.9626	147.5570	

-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 및 벽식 구조
- 자. 사 업 비 : 152,797,000천원
- 차. 사업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4년 12월 15일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64	강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산시 구암동 355-10번지 일원	-	증)26,405	26,405	금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	결정사유
신설	64	강변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군산시 구암동 355-10번지 일원	26,405	◦ 공동주택 건립을 통해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 하고,지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4	35~ 41	주간선 도로	6,314	조촌동 대로1-1	광로2-2 유원지구역계	일반 도로	-	건고228 86.5.23	
변경	대로	1	4	35~ 41	주간선 도로	6,314	조촌동 대로1-1	광로2-2 유원지구역계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2	188	15~ 17	국지 도로	68	대로1-4 구암동 480-22장	소로3-278 구암동 355-8대	일반 도로	-	금 회	
기정	소로	1	110	10	집산 도로	278	경암동 486-15	중로1-23 구암동 331-2	일반 도로	-	전북고135 78.5.22	
변경	소로	1	110	12	집산 도로	375	구암동 488-27	중로1-23 구암동 331-2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1	476	10	국지 도로	572	구암동 486-4	대로2-4 경암동	일반 도로	-	군산고242 03.4.27	
변경	소로	1	476	10	국지 도로	560	소로1-110 구암동 486-15	대로2-4 경암동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278	6	국지 도로	72	소3-499	소로2-945 구암동 358-10	일반 도로	-	전북고135 78.5.22	
변경	소로	3	278	6~ 11	국지 도로	127	중로2-188 구암동 355-3구	소로2-945 구암동 358-10	일반 도로	-	”	
폐지	소로	3	499	6	국지 도로	89	구암동 356-8	구암동 소로3-278	일반 도로	-	군산고242 03.4.27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1-4	대로 1-4	◦ 일부 구간 폭원 확장 - B = 1~4m, L=253m	◦ 공동주택 부지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 차로 설치에 따른 도로 일부 구간 폭원 확장
-	중로 2-188	◦ 노선 신설 - B = 15m, L = 68m	◦ 공동주택 부지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노선 신설
소로 1-110	소로 1-110	◦ 노선 연장 및 폭원 확장 - B = 10m → 10m~12m - L = 278m → 375m (증 97m)	◦ 공동주택 부지로의 진출입 및 보도 설치를 위한 노선 연장 및 폭원 확장
소로 1-476	소로 1-476	◦ 노선 단축 - L = 572m → 562m (감 10m)	◦ 소로1-110호선의 노선 연장에 따른 노선 단축
소로 3-499	-	◦ 노선 폐지 - B = 6m, L = 89m	◦ 노선폐지 후 중로 2-188호선 신설 및 소로 3-278호선 연장
소로 3-278	소로 3-278	◦ 선형 변경 및 노선 연장 - B = 6m → 6~11m - L = 72m → 127m (증 55m)	◦ 기존 도로 개설 현황에 따른 선형 변경 및 노선 연장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1	1	26,405	①	23,547	공동주택용지
			②	892	도로용지(무상귀속)
			③	1,616	도로용지(무상귀속)
			④	350	도로용지(무상귀속)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	①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3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29층 이하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실음생략

6. 관계도서는 군산시청(주택행정과 ☎063-454-3713)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22 - 8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5. 31.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2013-00002호 (2022. 5. 31.)
- ② 허가를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 ③ 허가목적 : 기상탑설치 운영
- ④ 허가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143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900m²
- ⑥ 허가기간 : 2022. 5. 31. ~ 2031. 5. 31.까지

군산시 공고 제2022-1094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17호)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조촌동 119-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17호)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이 작성·제출되어 실시계획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0일

군 산 시 장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사업의 개요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조촌동 119-7번지 외 12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17호) 조성사업
 - 2) 명 칭 : 군산 조촌동 완충녹지 17호 조성사업
 -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A=8,789.2m²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4. 06. 30.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4.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조촌동	119-7	임	72.0	72.0	군산시					
조촌동	119-8	전	106.0	106.0	군산시					
조촌동	119-20	임	202.0	202.0	군산시					
조촌동	119-21	임	2,978.0	2,978.0	군산시					
조촌동	126-32	전	154.0	154.0	군산시					
조촌동	126-33	전	377.0	377.0	군산시					
조촌동	126-34	전	263.0	263.0	군산시,					
					경남기업 주식회사	충남 아산시 청운로 176번길 25. 2층				
조촌동	909-1	잡	4,637.2	3,125.5	군산시					
조촌동	119-10	임	1,488.0	31.0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조촌동	126-1	전	3,139.0	744.0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조촌동	126-6	전	25.0	25.0	군산시					
					경남기업 주식회사	충남 아산시 청운로 176번길 25. 2층				
조촌동	126-9	임	73.0	22.0	국(기획재정부)					
조촌동	909-2	잡	1,515.2	689.7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합 계	13필지		15,029.4	8,789.2						

군산시 공고 제2022-1126호

2022년 숲길(트래킹코스) 조성계획 공고

2022년 군산시 숲길조성계획에 대하여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숲길의 조성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숲길조성계획을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군 산 시 장



1. 숲길(등산로) 조성(정비) 계획

명 칭	위 치	사업량(km)	비 고
계	3개 노선	1.228	
말도구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92-1	0.340	신설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97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95		
보농도구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149	0.440	신설
명도구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110	0.448	신설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111-1		

2. 숲길 노선의 지정(정비) 목적 : 등산·휴양 등 산림 내 여가활동을 위하여 숲길(트래킹코스) 조성 및 유지관리로 쾌적한 산림휴양문화 제공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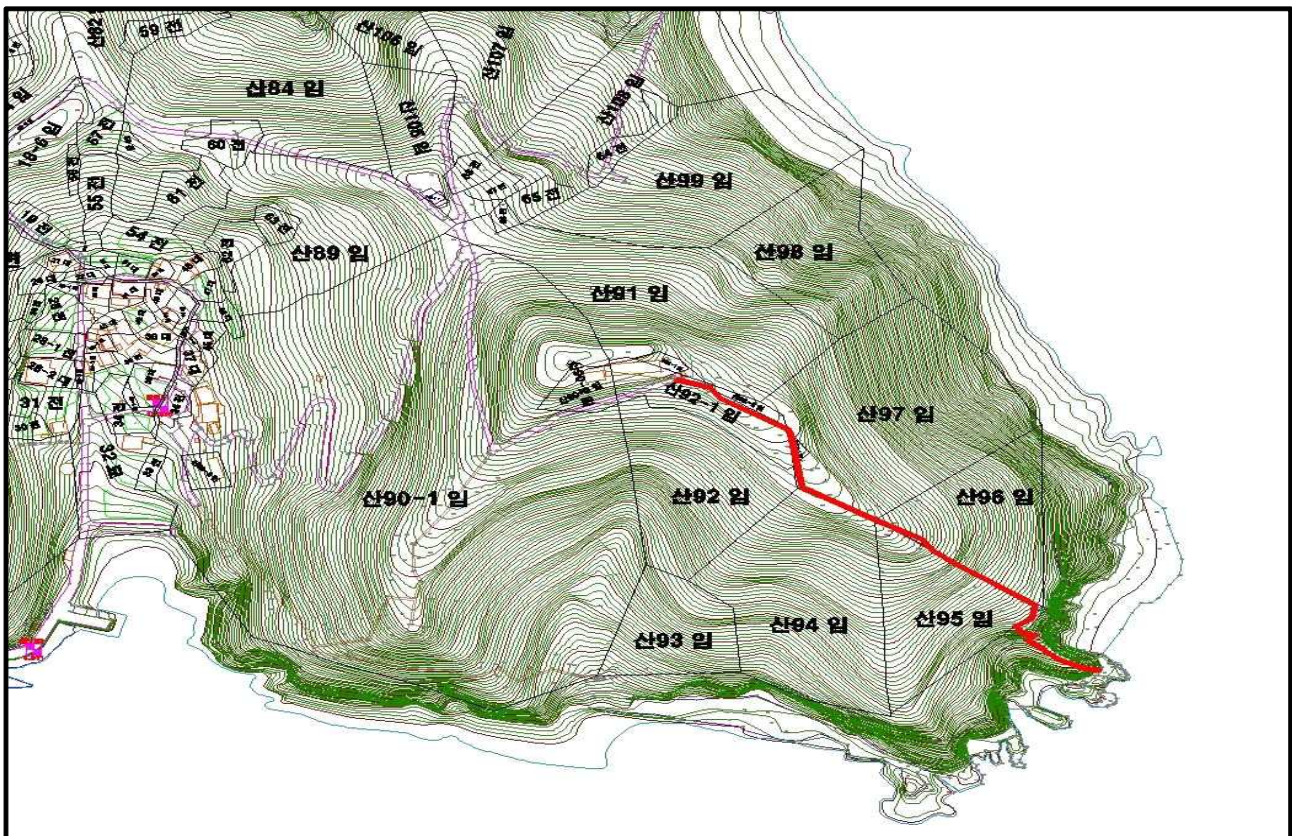
3. 숲길 노선의 지정 기간 : 기한 없음

4. 숲길 노선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별 지번·지목·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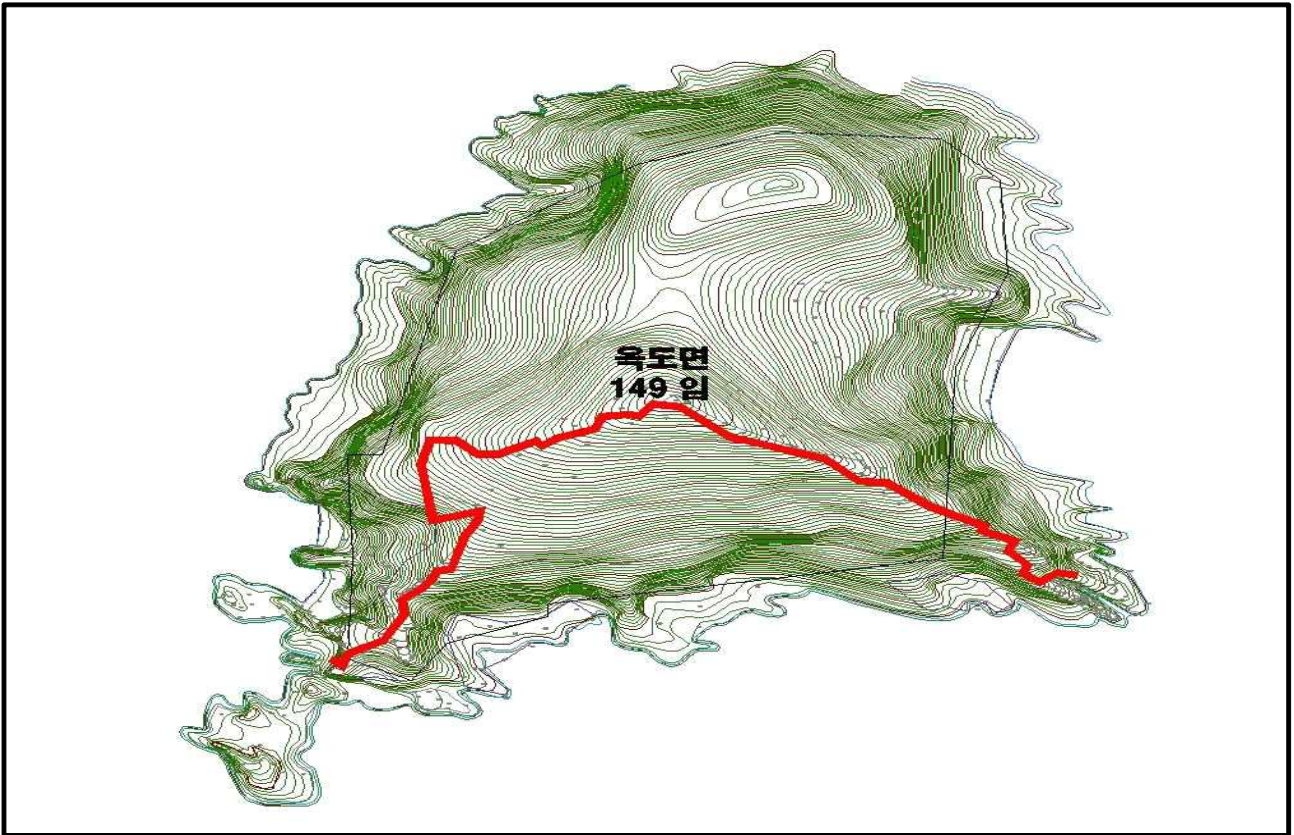
명 칭	위 치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편입	
말도구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92-1	임야	2,341	124.92	박*열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97	임야	12,144	153.18	윤*권 외 2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95	임야	5,653	197.10	윤*창
보농도구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149	임야	43,434	437.64	국(산림청)
명도구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110	임야	8,357	306.90	이*경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111-1	임야	110,876	499.50	백*필 외 7

5. 2022년 숲길(트래킹코스) 정비사업 노선의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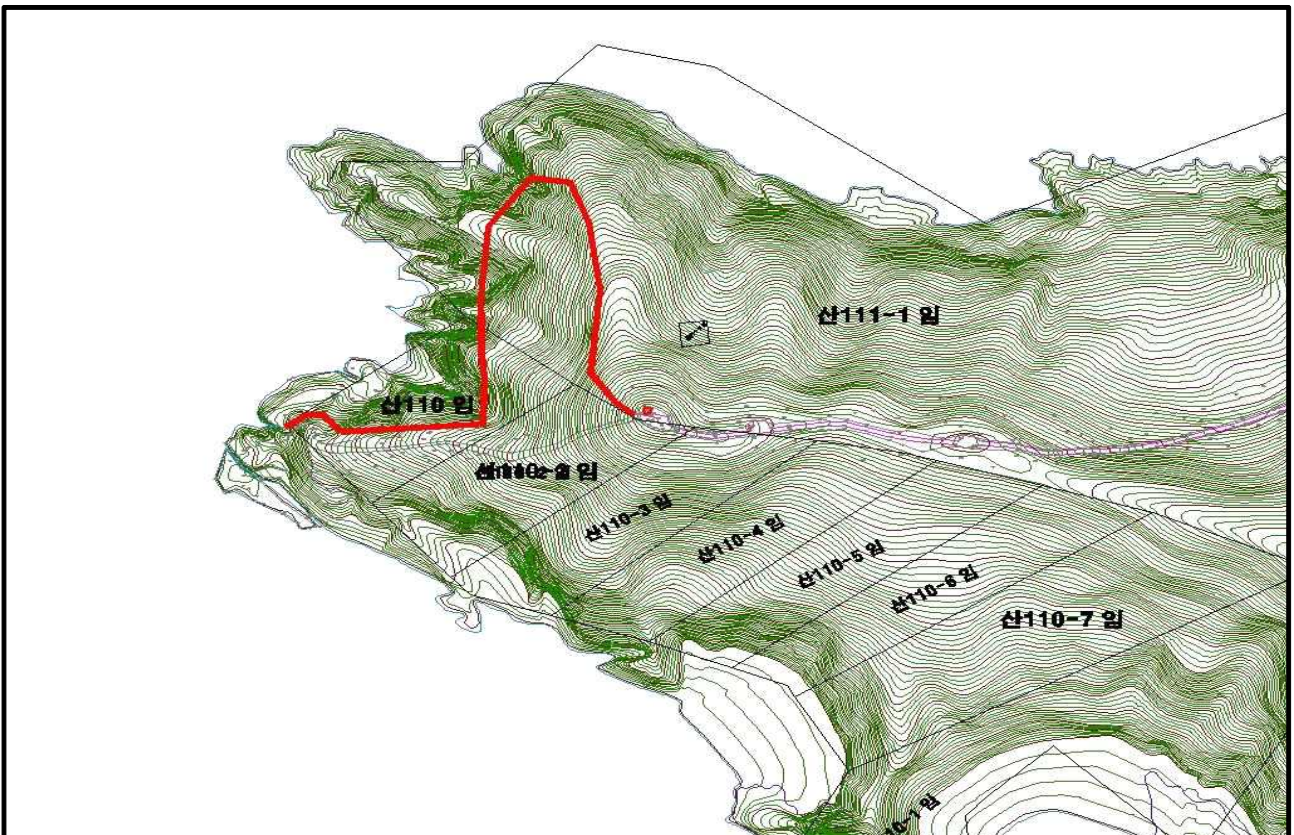
가. 말도구간 노선 및 편입용지도



나. 보농도구간 노선 및 편입용지도



다. 명도구간 노선 및 편입용지도



군산시 공고 제2022-117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창성동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송달대상자의 수취인 주소·거소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5. 30.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창성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나. 위 치 : 군산시 창성동 24-8번지 일원
- 다. 사업내용 : 암석절취 및 토공, 수로관 부설 698m, 마운딩 77m, 사면 식재 및 녹화, 지장물 철거 및 처리 등
- 라. 시 행 자 : 군산시장
- 마. 사업기간 : 2019. 1. ~ 2022. 12.

2. 공고기간 : 2022. 5. 31. ~ 6. 14.(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시보, 홈페이지 게시

4. 보상계획

- 가. 장 소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5층) 자연재난계(☎063-454-3863)
 - 나. 시 기 : 2022. 5. 31.(화) ~ 2022. 6. 14.(화)
 - 다. 방 법 : 보상협의(소유권 등기이전) 후 신청 은행계좌로 입금
 - 라. 대 상 : 창성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편입 토지 및 지장물
 - 마.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1) 공통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기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2) 그 외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 ※ 소유권 이외의 권리(근저당권 설정, 압류 등)에 관한 사항은 해지 후 협의
 ※ 상속대상자는 상속관련 절차 완료 후 협의

5. 공시송달 대상

1) 편입 토지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창성동	24-8	대	89.2㎡	89.2㎡	박*협	군산시 백릉로 162, 1동 604호 (조촌동, 삼성아파트)	
2	창성동	24-8	대	82.6㎡	82.6㎡	윤*자	군산시 의료원로 188, 107동 302호 (나운동, 나운1차서호아파트)	
3	창성동	24-8	대	79.3㎡	79.3㎡	오*홍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884번길 68-6, C동 8호(남동, 은화삼샤인빌)	
4	창성동	24-8	대	578.4	578.4	김*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곡동 259-38	
5	창성동	24-17	도로	82	82	김*균	서울특별시 길동 산1-1 삼익파크맨 션 502동 2층 3호	
6	창성동	24-28	도로	2	2	김*균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산1-1 삼익 파크맨션 502동 2층 3호	
7	둔율동	182-3	도로	18	18	안*례	군산시 둔율동 182	
8	둔율동	186-28	대	84.9	84.9	서*기	익산시 함열읍 와리 226	
9	둔율동	186-37	대	183	183	서*기	익산시 함열읍 와리 226	
10	둔율동	186-47	대	33	33	서*기	익산시 함열읍 와리 226	
11	둔율동	186-48	대	30	30	서*기	익산시 함열읍 와리 226	
12	둔율동	186-49	대	13	13	서*기	익산시 함열읍 와리 226	

2) 편입 지장물

순번	위치	지번	편입물건	구조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2	둔율동	186-10	대문	철재	1식	소유자 불 명		
			웬스	H=1.0m	9M			
			감나무		2주			
			대추나무		1주			
			무화과		1주			

6. 기타사항

가. 보상협의 요청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063-454-38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22 - 1201호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 지정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 6. 2.

군 산 시 장



1. 도로의 노선지정 내용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m)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사유
				기점	종점			도로너비 (m)	포장너비 (m)	
옥산면	농도	구염선	304호	옥봉리 1656	옥봉리 1402-1	1,960	옥서	12	12	농어촌도로의 개설

2. 사업명 : 옥서면 304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3. 사업기간 : 2019. 1. ~ 2025. 12.

4. 사업시행 : 군산시청 건설과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6. 지형도면고지도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나. 열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에 의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군계획시설(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1) 군계획시설(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101	12	집산 도로	1,960	옥봉리 1656	옥봉리 1402-1	농어촌 도로	-	금회	

2) 군계획시설(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 로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신설	중로3-101호선	연장 : 1,960m 폭원 : 12m	지역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농어촌도로 확포장

■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조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옥산면 옥봉리 134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나. 명 칭 : 옥서면 농어촌도로(304호선) 확포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사업의 면적 : 30,438.3m²

나. 사업의 규모 : 304호선 확포장 L=1.96km, B=7→12m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청(도시계획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 ~ 2024.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 도로노선지정 편입조서로 같음

※ 기타 공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6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평인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종류 내용	
1	옥서면 옥봉리	1656-79	구	1,341.0	1,341.0	국(농림수 산부)					
2	옥서면 옥봉리	1666-2	도	239.0	239.0	국(농수산 부)					
3	옥서면 옥봉리	1666-3	도	1,869.0	1,869.0	국(농수산 부)					
4	옥서면 옥봉리	1278-12	도	4.0	4.0	군산시					
5	옥서면 옥봉리	1277-3	도	26.0	26.0	강조*	옥서면 옥봉리 ***				
6	옥서면 옥봉리	1277-6	답	216.0	65.0	군산시					
7	옥서면 옥봉리	1656-78	구	1,096.0	1,096.0	국(농림수 산부)					
8	옥서면 옥봉리	1339-6	대	214.0	32.0	군산시					
9	옥서면 옥봉리	1339-7	구	135.0	48.0	군산시					
10	옥서면 옥봉리	1339-8	답	66.0	41.0	군산시					
11	옥서면 옥봉리	1340-8	답	198.0	180.0	군산시					
12	옥서면 옥봉리	1341-5	답	185.0	159.0	군산시					
13	옥서면 옥봉리	1979-4	답	2,985.8	7.0	김애*	옥서면 옥봉리 ***				
14	옥서면 옥봉리	1344-1	답	206.0	206.0	군산시					
15	옥서면 옥봉리	1815-22	답	51.1	51.1	김현*	옥서면 옥봉리 ***				
16	옥서면 옥봉리	1815-21	답	600.2	5.0	김순*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봉들3길 ***				
17	옥서면 옥봉리	1815-20	답	1,421.6	15.0	김순*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봉들3길 ***				
18	옥서면 옥봉리	1345-3	답	161.0	161.0	군산시					
19	옥서면 옥봉리	1345-4	도	5.0	5.0	김재*	옥서면 옥봉리 ***				
20	옥서면 옥봉리	1347-1	도	6.0	6.0	국(건설부)					
21	옥서면 옥봉리	1347-6	답	166.0	166.0	군산시					
22	옥서면 옥봉리	1348-4	답	184.0	119.0	군산시					
23	옥서면 옥봉리	1815-23	답	11.0	11.0	김철*	옥서면 옥봉리 ***				
24	옥서면 옥봉리	1275-5	도	26.0	26.0	군산시					
25	옥서면 옥봉리	1275-11	답	75.0	75.0	군산시					
26	옥서면 옥봉리	1274-4	도	30.0	30.0	군산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폐입 면적 (㎡)	설문 명칭	주소	설문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7	옥서면 옥봉리	1274-8	답	53.0	53.0	군산시					
28	옥서면 옥봉리	1273-6	도	12.0	12.0	군산시					
29	옥서면 옥봉리	1270-3	도	17.0	17.0	군산시					
30	옥서면 옥봉리	1270-1	도	1.0	1.0	황순*	옥서면 옥봉리 ***				
31	옥서면 옥봉리	1269-7	도	33.0	13.0	서창*	옥서면 옥봉리 ***				
32	옥서면 옥봉리	1267-12	도	17.0	17.0	국(건설부)					
33	옥서면 옥봉리	1266-4	도	33.0	33.0	서석*	서울 동작구 흑석동 ***				
34	옥서면 옥봉리	1266-5	답	57.0	7.0	군산시					
35	옥서면 옥봉리	1265-3	도	17.0	5.0	박희*	옥서면 옥봉리 ***				
36	옥서면 옥봉리	1364-9	구	151.0	63.0	군산시					
37	옥서면 옥봉리	1352-9	도	88.0	6.0	강원*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봉들3길 ***				
38	옥서면 옥봉리	1353-7	답	280.0	226.0	군산시					
39	옥서면 옥봉리	1353-6	도	60.0	60.0	군산시 외 3인					
40	옥서면 옥봉리	1354-8	답	232.0	232.0	군산시					
41	옥서면 옥봉리	1354-7	도	36.0	36.0	군산시					
42	옥서면 옥봉리	1815-24	답	93.6	93.6	임홍*	옥서면 옥봉리 ***				
43	옥서면 옥봉리	1656-82	구	64.0	64.0	국(농림수 산부)					
44	옥서면 옥봉리	1355-2	도	40.0	40.0	채규*	옥서면 옥봉리 ***				
45	옥서면 옥봉리	1355-3	답	211.0	211.0	군산시					
46	옥서면 옥봉리	1355-6	답	34.0	34.0	군산시					
47	옥서면 옥봉리	1356-1	도	36.0	36.0	채성동					
48	옥서면 옥봉리	1356-3	답	249.0	249.0	군산시					
49	옥서면 옥봉리	1356-6	답	102.0	102.0	군산시					
50	옥서면 옥봉리	1359-1	도	46.0	46.0	국(건설부)					
51	옥서면 옥봉리	1359-4	답	227.0	227.0	군산시					
52	옥서면 옥봉리	1359-7	답	101.0	101.0	군산시					
53	옥서면 옥봉리	1360-1	도	46.0	46.0	김기*	옥서면 옥봉리 ***				
54	옥서면 옥봉리	1360-3	답	227.0	227.0	군산시					
55	옥서면	1360-6	답	52.0	52.0	군산시					

입원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필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옥봉리										
56	옥서면 옥봉리	1363-1	도	46.0	46.0	김기*	옥서면 옥봉리 ***				
57	옥서면 옥봉리	1363-5	답	209.0	209.0	군산시					
58	옥서면 옥봉리	1363-9	답	33.0	33.0	군산시					
59	옥서면 옥봉리	1364-18	구	2.0	2.0	군산시					
60	옥서면 옥봉리	1364-19	답	23.0	23.0	군산시					
61	옥서면 옥봉리	1364-6	답	873.0	732.0	군산시					
62	옥서면 옥봉리	1364-10	구	1.0	1.0	군산시					
63	옥서면 옥봉리	1364-7	구	31.0	31.0	군산시					
64	옥서면 옥봉리	1364-11	답	34.0	34.0	군산시					
65	옥서면 옥봉리	1656-83	구	188.0	188.0	국(농림수 산부)					
66	옥서면 옥봉리	1368-6	답	541.0	473.0	군산시					
67	옥서면 옥봉리	1369-11	답	337.0	337.0	김원*	옥서면 옥봉리 ***				
68	옥서면 옥봉리	1371-5	답	223.0	192.0	군산시					
69	옥서면 옥봉리	1372-5	답	350.0	350.0	군산시					
70	옥서면 옥봉리	1373-5	답	258.0	258.0	군산시					
71	옥서면 옥봉리	1374-5	답	211.0	211.0	군산시					
72	옥서면 옥봉리	1928-1	구	110.8	110.8	국(농림부)					
73	옥서면 옥봉리	1824-11	답	34.2	34.2	허영*	회현면 대정리 ***				
74	옥서면 옥봉리	1824-12	답	51.5	51.5	조경*	전라북도 군산시 계산로 ***				
75	옥서면 옥봉리	1253-1	답	37.0	37.0	군산시					
76	옥서면 옥봉리	1367-9	답	275.0	227.0	군산시					
77	옥서면 옥봉리	1924-1	도	145.1	145.1	국(농림부)					
78	옥서면 옥봉리	1368-1	답	309.0	29.0	군산시					
79	옥서면 옥봉리	1369-10	답	22.0	22.0	김원*	옥서면 옥봉리 ***				
80	옥서면 옥봉리	1369-9	도	91.0	91.0	국(건설부)					
81	옥서면 옥봉리	1825-16	답	24.4	24.4	김덕*	선연리 ***				
82	옥서면 옥봉리	1369-7	답	13.0	13.0	군산시					
83	옥서면 옥봉리	1926-1	도	19.7	19.7	국(농림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m ²)	필면적 (m ²)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4	옥서면 옥봉리	1825-17	답	73.0	73.0	허영*	회현면 대정리 ***				
85	옥서면 옥봉리	1371-6	답	72.0	72.0	군산시					
86	옥서면 옥봉리	1371-2	도	146.0	146.0	국(건설부)					
87	옥서면 옥봉리	1825-18	답	73.1	73.1	군산시					
88	옥서면 옥봉리	1927-1	구	703.1	703.1	국(농림부)					
89	옥서면 옥봉리	1372-6	답	50.0	50.0	군산시					
90	옥서면 옥봉리	1372-2	도	132.0	132.0	국(건설부)					
91	옥서면 옥봉리	1825-19	답	85.4	85.4	박만*	옥구읍 어은리 ***				
92	옥서면 옥봉리	1373-6	답	44.0	44.0	군산시					
93	옥서면 옥봉리	1373-2	도	132.0	132.0	국(농수산 부)					
94	옥서면 옥봉리	1825-20	답	42.9	42.9	박영*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1길 ***				
95	옥서면 옥봉리	1374-6	답	77.0	77.0	군산시					
96	옥서면 옥봉리	1374-2	도	132.0	132.0	국(건설부)					
97	옥서면 옥봉리	1375-3	답	52.0	52.0	군산시					
98	옥서면 옥봉리	1825-21	답	33.3	33.3	군산시					
99	옥서면 옥봉리	1825-22	답	70.6	70.6	군산시					
100	옥서면 옥봉리	1250-4	답	33.0	33.0	군산시					
101	옥서면 옥봉리	1824-13	답	214.0	214.0	유은*	전라북도 군산시 축동로 ***				
102	옥서면 옥봉리	1249-4	답	33.0	33.0	군산시					
103	옥서면 옥봉리	1246-4	답	29.0	29.0	군산시					
104	옥서면 옥봉리	1824-9	답	189.4	189.4	군산시					
105	옥서면 옥봉리	1242-4	답	78.0	78.0	군산시					
106	옥서면 옥봉리	1241-8	답	89.0	89.0	군산시					
107	옥서면 옥봉리	1824-15	답	30.1	30.1	박순*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구저수지로 ***				
108	옥서면 옥봉리	1241-9	구	3.0	3.0	군산시					
109	옥서면 옥봉리	1974-1	구	20.2	20.2	국(농림부)					
110	옥서면 옥봉리	1975-1	도	236.	23.6	국(농림부)					
111	옥서면 옥봉리	1239-3	답	104.0	104.0	군산시					
112	옥서면	1827-1	답	2,689.4	23.0	고을*	산북동 ***				

입원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필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옥봉리										
113	옥서면 옥봉리	1238-1	답	109.0	109.0	군산시					
114	옥서면 옥봉리	1827-2	답	2,996.1	24.0	김금*	옥서면 옥봉리 ***				
115	옥서면 옥봉리	1237-2	답	63.0	63.0	군산시					
116	옥서면 옥봉리	1827-3	답	2,876.5	27.0	서동*	선연리 ***				
117	옥서면 옥봉리	1237-1	답	51.0	51.0	군산시					
118	옥서면 옥봉리	1825-23	답	41.7	41.7	군산시					
119	옥서면 옥봉리	1825-15	답	8.0	8.0	군산시					
120	옥서면 옥봉리	1927-3	구	112.5	112.5	국(농림부)					
121	옥서면 옥봉리	1382-3	답	133.0	33.0	군산시					
122	옥서면 옥봉리	1383-3	답	129.0	27.0	군산시					
123	옥서면 옥봉리	1671	도	5.0	5.0	국(농수산 부)					
124	옥서면 옥봉리	1384-3	답	27.0	27.0	군산시					
125	옥서면 옥봉리	1953-1	구	227.7	227.7	국(농림부)					
126	옥서면 옥봉리	1385-3	답	32.0	32.0	군산시					
127	옥서면 옥봉리	1386-3	답	53.0	53.0	군산시					
128	옥서면 옥봉리	1236-1	답	124.0	124.0	군산시					
129	옥서면 옥봉리	1827-4	답	2,877.9	19.0	서동*	선연리 ***				
130	옥서면 옥봉리	1235-3	답	123.0	123.0	군산시					
131	옥서면 옥봉리	1827-5	답	3,013.8	42.0	이천*	옥서면 옥봉리 ***				
132	옥서면 옥봉리	1234-3	답	122.0	122.0	군산시					
133	옥서면 옥봉리	1827-6	전	2,874.6	21.0	김석*	옥서면 옥봉리 ***				
134	옥서면 옥봉리	1233-5	답	114.0	114.0	군산시					
135	옥서면 옥봉리	1230-1	답	70.0	33.0	군산시					
136	옥서면 옥봉리	1229-1	답	74.0	46.0	군산시					
137	옥서면 옥봉리	1226-1	답	86.0	86.0	군산시					
138	옥서면 옥봉리	1225-1	답	87.0	87.0	군산시					
139	옥서면 옥봉리	1387-3	답	60.0	60.0	군산시					
140	옥서면 옥봉리	1388-3	답	58.0	58.0	군산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폐입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내용	
141	옥서면 옥봉리	1389-11	답	69.0	69.0	군산시					
142	옥서면 옥봉리	1390-13	답	67.0	67.0	군산시					
143	옥서면 옥봉리	1391-13	답	49.0	49.0	군산시					
144	옥서면 옥봉리	1391-17	철	30.0	30.0	국(국방부)					
145	옥서면 옥봉리	1392-8	답	43.0	43.0	국(기획재 정부)					
146	옥서면 옥봉리	1393-5	답	161.0	73.0	군산시					
147	옥서면 옥봉리	1394-5	답	173.0	76.0	군산시					
148	옥서면 옥봉리	1395-5	답	162.0	81.0	군산시					
149	옥서면 옥봉리	1396-3	답	165.0	82.0	군산시					
150	옥서면 옥봉리	1222-1	답	85.0	85.0	군산시					
151	옥서면 옥봉리	1221-1	답	46.0	46.0	군산시					
152	옥서면 옥봉리	1218-1	답	52.0	33.0	군산시					
153	옥서면 옥봉리	1217-1	답	249.0	161.0	군산시					
154	옥서면 옥봉리	1216-2	답	449.0	193.0	군산시					
155	옥서면 옥봉리	1216-3	구	36.0	6.0	군산시					
156	옥서면 옥봉리	1656-86	구	11,901.0,	11,901.0	국(농림축 산식품부)					
157	옥서면 옥봉리	1662-1	제	9,614.0	111.0	국(농수산 부)					
158	옥서면 옥봉리	1397-3	답	186.0	84.0	군산시					
159	옥서면 옥봉리	1398-3	답	218.0	96.0	군산시					
160	옥서면 옥봉리	1399-1	답	203.0	98.0	군산시					
161	옥서면 옥봉리	1400-1	답	178.0	100.0	군산시					
162	옥서면 옥봉리	1401-1	답	157.0	103.0	군산시					
163	옥서면 옥봉리	1402-2	답	89.0	89.0	군산시					
164	옥서면 옥봉리	1959-1	구	9.3	9.3	국(농림부)					
165	옥서면 옥봉리	1402-3	구	8.0	8.0	군산시					
166	옥서면 옥봉리	1402-5	구	4.0	4.0	군산시					

297mm×210mm[백상지 80g/㎡]